

납세자 중심의 국세와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정훈 | 박하얀 | 이나현

2023. 7.

www.kipf.re.kr

세정연구 23-03

납세자 중심의 국세와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2023. 7.

정훈 · 박하얀 · 이나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박하얀 세정연구팀 연구원

이나현 세정연구팀 변호사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현황	4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및 비중	4
가. 조세 체계	4
나.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	7
2. 신고 및 납부 시스템	8
가. 신고	8
나. 납부	9
3.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11
III. 지방소득세의 독립지방소득세로의 전환	14
1. 조세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검토	14
2. 지방소득세 독립의 배경 및 의의	16
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징수 방식의 변화	20
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교	23
5.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27
IV.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현행 과세 행정의 검토	30
1. 다원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	30
가. 온라인 플랫폼 상세 현황 및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시도	30
나. 현장 신고 창구의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현황	48

2. 지방소득세 독립 후 쟁점	53
가. 경정청구 효력의 상호 인정 여부	53
나. 중복세무조사의 우려	55
3.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정보 공유 관련	60
V. 시사점	66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창구의 통합적 연계	66
가.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적 연계	66
나. 현장 창구 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68
다. 위탁 및 통합징수 가능성의 검토	70
2.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 및 활성화	71
3.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의 일원화	73
4.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방안 마련	79
5. 향후 논의사항	83
참고문헌	84

표 목차

〈표 II-1〉 국세의 종류	4
〈표 II-2〉 지방세의 종류	6
〈표 II-3〉 지방세의 세목별 운영 주체	7
〈표 II-4〉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방법	10
〈표 II-5〉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	12
〈표 III-1〉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18
〈표 III-2〉 「지방세법」상 규정된 과세표준	21
〈표 III-3〉 「지방세법」상 규정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1
〈표 III-4〉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22
〈표 III-5〉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23
〈표 III-6〉 조세특례 및 지방세특례의 의의	24
〈표 III-7〉 국세와 지방세의 소득세 조세지출 적용 비교	25
〈표 III-8〉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29
〈표 IV-1〉 홈택스 주요 메뉴 및 기능	30
〈표 IV-2〉 손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34
〈표 IV-3〉 스마트 위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39
〈표 IV-4〉 2019년 기준 지방세 전자세정 시스템별 실적 현황	43
〈표 IV-5〉 위택스 및 지역별 이택스 비교	44
〈표 IV-6〉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지역	50
〈표 IV-7〉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발의된 법률안	59

그림 목차

[그림 II-1] 국세 및 지방세 비중(1971~2021)	8
[그림 III-1]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18
[그림 IV-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	35
[그림 IV-2] 위택스 전체 메뉴	37
[그림 IV-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38
[그림 IV-4] 스마트 위택스 첫 화면	40
[그림 IV-5] 위택스의 기능	45
[그림 IV-6] 대구시 달성군 국세청 지역민원실의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사례	51

I. 서론

-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을 함께 제정하며 정부 수립단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정부의 세제 및 재정 분리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¹⁾
- 그러나 도입 직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짐
 - 지방자치제도 첫 도입 시 자체 세입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전쟁과 행정부 최고 수장의 중앙 집권 의지 등으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1961년 발발한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전면 중단됨
- 이후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도입되면서,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2011년에는 「지방세법」만 존재하던 과거에서 국세 관련법과 유사하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을 분리함으로써 더욱 형식을 갖추게 됨
 - 기존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운영되던 징수 업무 또한 2015년 개정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기 시작함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운영을 자립해 가는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시스템 역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함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원화된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짐

1)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60년사: 제1권 연대사』, 2017, p. 92.

- 현재 현장 창구의 경우 납세자들이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청사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해야 함
-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이택스(지방세) 등으로 다원화되어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의 별도의 협력비용이 요구되고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위해 각 온라인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탐색하여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신고 및 납부를 번거롭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를 위해 3개의 시스템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일부 납세자가 존재하기도 함
- 또한 국세인 소득세와 통합되어 징수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 세제로 개편됨에 따라 분리된 행정 사항들과 관련한 쟁점들이 등장함
 - 지방소득세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0년부터 독립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신고 및 납부되던 과거에 비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됨
 - 이 밖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환급을 비롯하여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리적 해석 등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발생시켜오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한 신고 및 납부 창구에 대한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득세 독립과 함께 발생한 행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제도에서의 납세협력과 조세 행정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실체법적 제도 그 자체나 세원 또는 세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님
 -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체계와 신고납부 시스템,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를 정리함

- 제3장에서는 지방소득세 독립과 관련하여, 그 배경과 의의, 그로 인해 발생한 징수 방식의 변화와 함께 독립세 과세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봄
- 제4장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세부 사항 및 연계 현황을 비롯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해당 쟁점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현황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및 비중

가. 조세 체계

-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13개 세목을 국세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13개 세목이 이에 해당함
- 조세는 일반 예산에 편입되는지 사용 목적이 특별히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3개 세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표 Ⅱ-1〉 국세의 종류

사용목적	세목 ¹⁾	과세대상 및 세율
보통세	소득세 ²⁾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6~45%의 누진세율로 부과
	법인세 ³⁾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9~24%의 누진세율로 부과
	상속세 ⁴⁾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는 국내 한정)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부과
	증여세 ⁵⁾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부과
	종합부동산세 ⁶⁾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의 초과액에 대해 주택 0.5~2.7%(3주택 이상 소유 시 0.7~5%), 토지 1~3%(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0.5~0.7%)의 누진세율로 부과

〈표 II-1〉의 계속

사용목적	세목 ¹⁾	과세대상 및 세율
보통세	부가가치세 ⁷⁾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
	개별소비세 ⁸⁾	보석 및 시계, 모피, 고급 가구, 담배, 자동차 및 석유 제품, 유흥업소, 골프장과 경마장 등의 입장 행위 등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하게 부과
	주세 ⁹⁾	주정, 발효주, 증류주 및 기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 반출하거나 이를 위탁한 자나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주종별로 상이하게 부과
	인지세 ¹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서의 종류와 표기된 가액에 따라 100원에서 35만원의 세액을 부과
목적세	증권거래세 ¹¹⁾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0.35%(2021~2022년에 한해 0.43%)의 세율로 부과
	교육세 ¹²⁾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과세액의 10~30%를 부과
	농어촌특별세 ¹³⁾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증권의 양도가액, 개별소비세·취득세·레저세·종합부동산세 세액의 10~30%를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 ¹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각각 리터당 475원과 340원의 세율로 부과

- 자료: 1) 「국세기본법」 제2조
 2) 「소득세법」 제4조, 제55조
 3) 「법인세법」 제4조, 제55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6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6조
 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7)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0조
 8) 「개별소비세법」 제1조
 9) 「주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10)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1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8조
 12) 「교육세법」 제5조
 1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지방세는 지자체가 상하수도, 생활환경개선, 청소, 도로, 소방과 같은 지역 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의 충당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재산, 그리고 수익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임²⁾

2)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알기쉬운 지방세」, <https://etax.daegu.go.kr/local/info/easy>, 검색 일자: 2023. 4. 8.

- 지방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총 11개 세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2〉 지방세의 종류

사용목적	세목 ¹⁾	과세대상 및 세율	
보통세	취득세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1~12%의 세율로 부과	
	레저세	승차 투표권이나 승마 투표권 발매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	
	지방소비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총액)의 21% 부과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의 자본금 및 출자액에 따라 5만~20만원,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을 부과
		종업원분	월평균 종업원 급여총액이 1.5억원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에 부과
	담배소비세	제조 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에 대해 담배 종류와 양(개비수 혹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26~1,007원의 종량세를 부과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대상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는 0.6~5.5%, 법인지방소득세는 0.9~2.4%의 누진세율로 부과	
	자동차세	일반 자동차 및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해 배기량·전기차 여부·사용목적(영업용)·크기에 따라 차등 과세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0.1~0.5%(골프장·고급오락장은 4%, 고급선박은 5%)의 세율로 부과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등기의 등록 당시 가액이나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의 채권액에 대해 등기 및 등록 종류에 따라 정률 혹은 정액으로 상이하게 과세
면허분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지자체 규모를 반영하여 4,500~67,500원을 부과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과 같은 특정자원이나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에 대해 채취한 자원량이나 시설의 생산량 등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 대상 세목에 따라 세액의 10~43.99%를 부과	

자료: 1) 「지방세기본법」 제7조

2)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구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검색일자: 2023.

5. 3. 각 항목 내용을 저자 정리

-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목은 앞서 제시한 11개 세목으로 동일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도,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따라 하위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구)와 세목을 분담 운영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표 II-3〉 참조)

〈표 II-3〉 지방세의 세목별 운영 주체

사용 목적	세목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
		특별(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특별자치시(도)세
보통세	취득세	○		○		○
	레저세	○		○		○
	지방소비세	○		○		○
	담배소비세	○			○	○
	주민세	○	△ ¹⁾		○	○
	지방소득세	○			○	○
	자동차세	○			○	○
	재산세		○		○	○
	등록면허세		○	○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교육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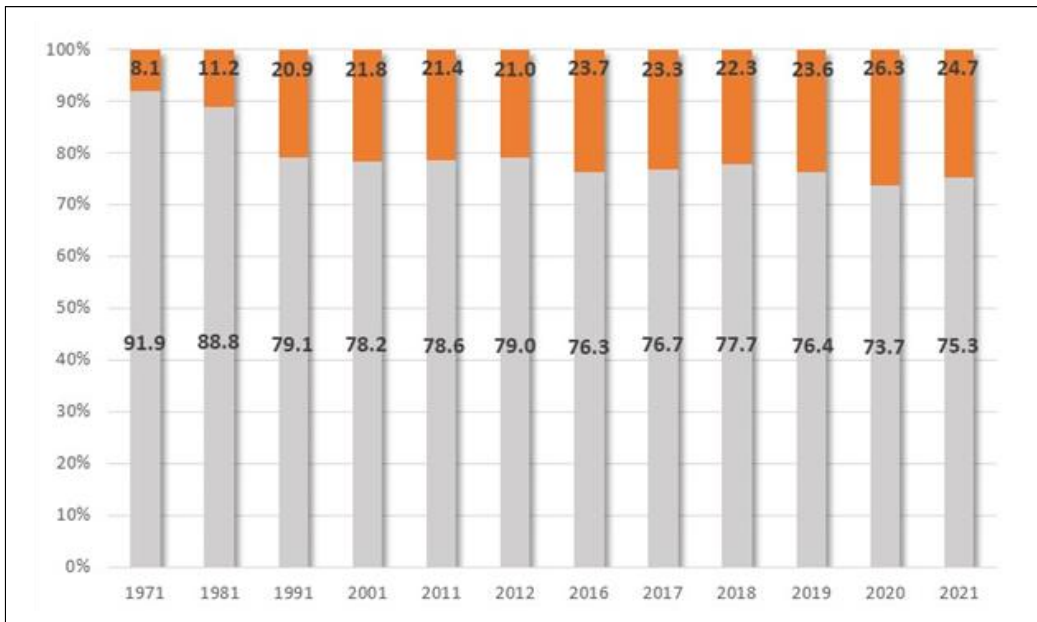
주: 1)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함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내용 저자 정리

나.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

-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주권이 점차 확대되며 1990년대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30여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II-1] 참조)
- 지방세 비중은 1971년 8.1%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91년에는 20.9%까지 증가하였음

- 1990년대 이후로는 2010년 초반까지 21% 내외를 머물다가 2010년 중반 이후 지방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여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23%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24%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1] 국세 및 지방세 비중(1971~2021)



자료: e-나라지표, 「국세 및 지방세 비중」,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검색일자: 2023. 4. 8. 자료를 저자 재구성

2.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가. 신고

- 최근의 국세 신고는 대부분 국세 포털인 PC 홈택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홈택스에서는 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증명, 확인, 납부, 부가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 이 밖에도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세무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가 가능함
 - 신고 서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신고를 확대하고 세무서 신고 창구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음
- 지방세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가 존재하며, 일부 개별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전자지방세정 시스템을 사용해 오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택스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세정업무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음
- 위택스를 통해 전국 모든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의 상세 기능은 이어지는 장에서 홈택스와 함께 다룸
 - 이 밖에도 납세자의 소재지 근처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나. 납부

- 국세와 지방세는 크게 관공서 방문,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납부 방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일부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존재함
- 국세의 현장 방문 납부는 세무서나 은행에서 가능한데, 세무서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한 무인수납창구가 상시 운영되고 유인 창구는 현금 수납에 한해 수납 집중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됨
 - 지방세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시청 민원실 내에 있는 무인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납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거의 유사하나, ATM 납부 시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은행 점포 내 무인공과금기는 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포털인 홈택스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서도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음
- 자동 납부는 지방세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 <표 II-4>에 기재함

<표 II-4>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관공서 방문	창구	세무서 • 현금수납 창구만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등 수납집중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인수납창구 이용	주민센터 •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일괄 납부 • 타인 신용카드일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단건 납부
	무인수납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 고지서 내 QR 코드 스캔하거나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만 가능	시청 민원실 무인수납기 • 신용카드, 본인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창구	• 납세고지서 지참 필요 •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ATM	• 전자납부번호 입력	• 현금카드(통장)로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무인공과금기	-	• 은행 점포 내 위치 •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별로 이용 시간이 상이 • 각 금융사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국세납부' '지방세납부' 등의 메뉴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하는 방식	
인터넷	홈택스 • 07:00~23:30 중 납부 가능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	위택스 • 07:00~23:00 중 납부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표 II-4〉의 계속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인터넷	지로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각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국세입금 메뉴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지방세입금 메뉴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	-	• 전 금융기관, 시청 세정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신청 •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 결제로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 정기 과세되는 세목에 한해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건당 500원 공제

자료: 1) 국세청 블로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tscafe/223078305547>, 검색일자: 2023. 4. 8.
 2)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4&cntntsId=7741>, 검색일자: 2023. 4. 8.
 3) 의정부시청, 「납부방법」,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204120100>, 검색일자: 2023. 4. 8.

3.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각 지방세와 국세 중 일부 세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등 상호관계성이 존재함
 -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기타 상황의 해당 세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데, 과세대상 세액 중 취득세와 레저세, 등록면허세가 포함됨³⁾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과세표준에 25.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안분되고 있음⁵⁾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4) 「지방세법」 제69조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동일하며,⁶⁾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함⁷⁾
 - 이때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해야 함⁸⁾
- 지방소득세는 현재 국세인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국세세율의 10% 수준에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제로 개편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신고부터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룸

〈표 II-5〉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

세목	세율
농어촌특별세(국세) ¹⁾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이자 및 배당 소득 감면액의 10%
	개별소비세액의 10%(사치성 물품) 혹은 30%(골프장 입장)
	증권거래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지방소비세 ²⁾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의 25.3%
법인·개인 지방소득세	2014년부터 독립세제로 개편되기 전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의 세율로 부과되었으며, 독립 후에도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 중

주: 밑줄은 지방세, 기울임체는 국세에 해당함

자료: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구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검색일자: 2023. 5. 3.

5) 「부가가치세법」 제72조

6) 「지방세법」 제67조

7) 「지방세법」 제68조

8)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 이 밖에도 유사한 목적 혹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중복으로 과세되고 있는 세목이 존재함
 -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의 경우 모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각각 국가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임⁹⁾
 - 교육세는 국세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¹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함¹¹⁾
 - 지방교육세는 본래 1982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되었던 교육세 운영 기한의 만료를 대비하여 기초적 교육재원 조달방식으로 구상이 시작된 세목이었음¹²⁾
 - 그러나 1991년 교육세가 이용시한을 폐지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 조세는 중복 과세의 성격을 지니게 됨¹³⁾
 -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되면서 그 과세대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로 설정됨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 바 있음¹⁴⁾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과거에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게 됨
 -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액 공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선고를 받음에 따라 공제 산식이 일부 변경되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으며 완전한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9) 「교육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49조

10) 「교육세법」 제5조

11) 「지방세법」 제151조

12) 오연천, 「지방교육세 신설구상의 접근구도와 설계방향」,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제27권 제2호, 1989, pp. 83~99.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교육세법([시행 1991. 1. 1.] [법률 제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27&ancYd=19901231&ancNo=04279&efYd=199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14) 한재명·김민정,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쟁점과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 81.

Ⅲ. 지방소득세의 독립지방소득세로의 전환

1. 조세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검토

- 지방 분권화된 조세 행정 시스템은 조직 구조 및 인사 관행과 관련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함¹⁵⁾
 -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수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 공무원 및 의회가 더욱 유연성 있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여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 특정 과세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보다 강점을 지님
 - 예를 들면,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 공무원들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관련 규제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 분권화는 지방 정부의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약화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며,¹⁶⁾ 과세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을 통한 분권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Liberati(2013)는 실증 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재원 조달 시 지방의 지출이 증가하고, 한정적 상황에서만 조세 분권화를 통해 지출이 감소한

15)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 115~116.

16) McLure, C. E., "Tax assignment problem: conceptual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in achieving sub-national fisc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1998; Liberati, Paolo, Agnese Sacchi, "Tax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157(1/2), 2013, p. 184 재인용

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¹⁷⁾

- 다만 이러한 지출 감소의 결과는 조세 분권화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는데, 세원을 공유하는 세금이 아닌 세원이 분리된 경우에 적용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최근 분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분권화 추진과 함께 개선을 고려해야 할 한계점 역시 분명 존재함¹⁸⁾
 - 중앙 정부 외에 여러 수준의 정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각 정부는 고유한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음
 - 이로 인해 업무와 인력의 중복이 발생하고, 납세자들에게는 각 정부의 서로 다른 형식과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그리고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 자원 제약에 기인하여 다양한 세무 행정 기능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인력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불복과 같은 영역에 더 적은 자원을 할당하는 지방 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타지역의 납세자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과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의 납세 검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 개인소득세를 납세자의 거주지나 소득의 원천지에 기반하여 지방 정부에서 직접 과세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¹⁹⁾
 - 우선 납세자의 거주지 관할권에 과세 권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갑’이 ‘가’ 지역에 거주하나 근무를 ‘나’ 지역에서 하는 경우 고용주의 원천징수세가 ‘갑’이 속

17) Liberati, Paolo and Agnese Sacchi, “Tax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157(1/2), 2013, p. 202.

18)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p. 115~116.

19) Bell, Michael E. and Joanna Regulska,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The Case of Financing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in Poland,” *Public Finance in a Worl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Forty-Seventh Congre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47, 1992, pp. 187~201.

- 해있는 거주지 관할권에 귀속되는지 고용주나 과세 관청 중 하나가 확인해야 함
- 반대로 소득의 원천지에 과세 권한이 있다면, ‘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갑’이 만약 ‘나’ 지역에서도 임대 소득과 같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이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함
 - 이때 각 지역에서 자체 세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세율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2. 지방소득세 독립의 배경 및 의의

- 과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20), 21)}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4년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공유하고 그 외 세율·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음²²⁾
- 정부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2013년 9월 24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²³⁾
 -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부과 구조에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율조정,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수가 자동으로 변동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

20) 결정세액의 10%

21) 과거 지방소득세(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sur-tax)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부과되는 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위해 과거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본문에서 ‘부가세 방식’이라고 편의상 표현하였으나, 이것이 실제 소득세의 부가세라는 의미는 아니며 과거의 지방소득세는 엄연한 독립세로 과세요건과 부과주체 등에 있어서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임(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22) 정지선·윤성만·최천규,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2015. pp. 161~192.

2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2013. 9.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969, 검색일자: 2023. 3. 23.

-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한 주 명분은 지방 자치 실시로 지방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방재정 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임²⁴⁾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13년 12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²⁵⁾
- 법률안을 통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것을 제안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1월 1일부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과세체계가 개편됨²⁶⁾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득세 총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율(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음
 - 독립세 방식으로 변환된 이후로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24) 유재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pp. 889~898.

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8762호」, 2013. 12., p. 2.

26) 위택스, 「2014년 지방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https://www.wetax.go.kr/html/popup/2014/3.html>, 검색일자: 2023. 3. 23.

〈표 Ⅲ-1〉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지방세법」	구성 및 내용	해당 조문
제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개정	
제1절 통칙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성, 과세기간, 납세지 등	제85조 내지 90조
제2절 거주자의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절차, 세액공제 및 감면,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제91조 내지 102조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계산 절차,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결정·경정 등	제103조 내지 103조의9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종합과세·분리과세	제103조의10 내지 103조의12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 환급 등	제103조의13 내지 103조의18
제6절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세액공제 및 감면,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등	제103조의19 내지 103조의32
제7절 내국법인의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과세표준, 연결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 등	제103조의33 내지 103조의4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등	제103조의41 내지 103조의46

자료: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그림 Ⅲ-1〕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자료: 위택스, 「2014년 지방소득세 이렇게 바뀔니다.」, <https://www.wetax.go.kr/html/popup/2014/3.html>, 검색일자: 2023. 3. 23.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지만 조세 행정에 비효율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 역시 존재함²⁷⁾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국세 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 세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상황에 맞는 조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었다는 점임
 - 지역 형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도를 반영할 수 있음
 - 제도 개편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지방소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워짐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변수는 세율적용과 세액공제, 감면 정도라는 의견이 있음²⁸⁾
 - 명목상 독립세화라고 하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임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납세협력비 증가 및 행정비용 증가가 있음
 - 납세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납세협력비 부담이 증가함
 - 지방세 당국은 지방소득세 제도의 복잡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필연적이므로 이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함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책의 사업비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만 58억원으로 S/W 개발 용역비로 51억원, 장비구입비로 7억원이 예정되었음²⁹⁾

27) 황영현,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에 관한 소고」, 『계간 세무사』, 제140호, 2014, pp. 33~63.

28) 유재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pp. 889~898.

29)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지방재정세제실, 등록번호 2013-91.

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징수 방식의 변화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사업소득에 더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오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전에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면,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지방소득세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형태였음

$$\text{총결정세액} \times 10\% = \text{개인지방소득세}$$

$$\text{총결정세액} \times 10\% = \text{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하여 산정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함
 - 「지방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할 것을 정하고 있음³⁰⁾

$$\begin{aligned} &\text{종합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text{산출세액} \pm \text{세액공제·감면} \\ &= \text{개인지방소득세} \end{aligned}$$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하여 산정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함

30) 「지방세법」 제95조

-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음³¹⁾

$\begin{aligned} & \text{법인세 과세표준} \times \text{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text{산출세액} \pm \text{세액공제} \cdot \text{감면} \\ & = \text{법인지방소득세} \end{aligned}$
--

〈표 III-2〉 「지방세법」상 규정된 과세표준

구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91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9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표 III-3〉 「지방세법」상 규정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95조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23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료: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31)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체계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함

〈표 Ⅲ-4〉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¹⁾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2), 3), 4)}
신고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주: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2)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 서식
 자료: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함

〈표 Ⅲ-5〉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구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¹⁾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2), 3)}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주: 1)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2) 「지방세법」 제103조의23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제3항
 자료: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교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조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부분임
 - 이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에 관한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특례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공제·감면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공제·감면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함

-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와 대칭하여 제정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III-6〉 조세특례 및 지방세특례의 의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 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저자 정리

- 2014. 12. 23. 이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장을 통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개정에 맞추어 2014. 12. 23.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음
-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하였음
 - 기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남아 있는 지방세특례 관련 내용은 농업·임업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 규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규정 정도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장의2에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을 농업 등, 공익·사회복지, 연구 및 인력개발, 문화 및 관광, 중소기업 등 지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례,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봄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통 특례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양 법 모두에서 감면·면제·공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등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따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이 확인됨

〈표 Ⅲ-7〉 국세와 지방세의 소득세 조세지출 적용 비교

항목 ²⁾	국세 ³⁾			지방소득세 ^{1), 3)}		
	조문	법인	개인	조문 ²⁾	법인	개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①	×	○	지특97의4①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10①1·3	○	○	지특102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69	×	○	지특129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	지특101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7	○	○	지특115조의4 ⁴⁾	×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24	○	○	지특99조	×	○
연금액좌세액공제	조특86조의4	×	○	지특97조의3	×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②	×	○	지특97조의4②	×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④	×	○	지특97조의4④	×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③	×	○	지특97조의4③	×	○
자녀세액공제	소득59의2	×	○	지특97조의2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30	×	○	지특116조① ⁵⁾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	○	○	-		

〈표 Ⅲ-7〉의 계속

항목 ²⁾	국세 ³⁾			지방소득세 ^{1), 3)}		
	조문	법인	개인	조문 ²⁾	법인	개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30의4	○	○	지특118	×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72	○	×	지특167조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63의2	○	×	지특124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77	○	○	지특132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	○	○	지특124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126의6	○	○	지특166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96의3	○	○	- ⁶⁾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95의2	×	○	137조의2	×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70	×	○	지특131	×	○
기장세액공제	소득56의2	×	○	지특93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104의8	○	○	167조의3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18의2	×	○	지특106조의2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66	○	×	지특126조 ⁷⁾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13의2	○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38의2	○	○	- ⁶⁾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96	○	○	지특138조	×	○

주: 1) 실질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됨

2) 항목은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난 2021년 조세지출 실적의 과세표준 중 세액공제·감면의 상위 29개를 선택함

3) 기울임체는 2023년 6월 기준 (실질적으로) 일몰된 규정임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6)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됨

7)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항

자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이 가지는 대표적인 효익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화된 지방의 역할에 맞추어 자주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임
 - 지방세 산출이 독립적 계산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국세의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수입이 좌우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해짐
 - 지자체별로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지방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

- 반대로 신고 등의 관련 업무가 기존 세무서에서 지방자체단체로 이관되면서 납세협력비용에 변화가 발생함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협력부담, 순효율성 비용, 심리비용을 합한 값을 의미함³²⁾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납세자는 과거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서 오는 절차적 부담이 추가되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에서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번 신고·납부하면 국세청이 산출된 세액에서 10%의 세율로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이전하는 형태여서 납세자에게는 단 한 번의 신고·납부행위만 요구되었음
 - 현재 온라인을 통한 국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신고로 완료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 사이트에서 각 신고하고 있음

32) 윤상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정책과제 2019-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독립세화 이후 납세자는 국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적법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방문해야 해서 양 기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납세자의 심리적 비용과 순효율성 비용이 많이 증가함
- 다만 2020년 무관할 신고제도³³⁾가 도입되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 신고로 인정하여 타지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부과될 무신고가산세의 위험은 줄어들었음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해졌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납부하던 동일한 세금에 대한 납세지의 추가 및 서류 제출의 중복으로 인한 번거로움만 인식될 소지가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사유로 과세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의 이원화된 신고·납부 절차로 납세자의 이동 동선 및 행위 태양이 추가되어 번거로움이 증가함
 - 국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상 번거로움이 증가함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
 - 국세 산출세액에 단일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던 가산세 방식의 지방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납세자는 누진세율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 가산세에 대한 계산을 직접 수행해야 함
 - 지방소득세 산출이 복잡해지면서 조세전문가에게 신고업무를 위임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특히 영세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위한 비용 부담이 증가함

33)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표 Ⅲ-8〉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독립세 방식의 장점	독립세 방식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가능 • 국세의 세제개편에 지방세 세수가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자체별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지방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된 신고 시스템 및 중복 서류 제출로 인해 납세자의 절차적 부담이 증가함 • 지방소득세 산출이 복잡해지면서 신고위임 등으로 인한 신고비용이 증가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현행 과세 행정의 검토

1. 다원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가. 온라인 플랫폼 상세 현황 및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시도

1) 국세(홈택스)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국세 서비스 플랫폼임
- 코로나19 이후 신고 창구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온라인 플랫폼인 홈택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홈택스는 현재 850여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목록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음

〈표 IV-1〉 홈택스 주요 메뉴 및 기능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신고·납부	이용 시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24:00 * 홈택스로 세금신고 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원, 법인세(정기신고) 2만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07:00~23:30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표 IV-1〉의 계속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신고·납부	신고 가능 세목	세금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현황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
	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
신고서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 •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또는 원천세 등)세금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신고자료 생성 필요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납부 선택 후 지로시스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원하는 형태의 납부(신고분 납부, 고지분 납부, 자진 납부, 타인세금 납부 등)를 선택 • 실제 납부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조회·발급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서비스 (납부내역조회 서비스에 한해 06:00~24:00)
	주요 서비스 목록	전자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목록조회, 합계표 및 통계, 본지점·총괄납부 조회권한 관리,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발급보류·예정목록, 거래처 및 품목관리, 메일 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등
		현금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사용·매입·매출내역, 현금영수증 수정, 발급수단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납세관리인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삭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제공동의: 조회, 미성년자료조회, 온라인신청, 제공동의 취소 등 • 자료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제출현황조회,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등 • 원천징수의무자: 전자문서 API 자료실 		

〈표 IV-1〉의 계속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조회 · 발급	주요 서비스 목록	세금 신고 납부	신고	• 세금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양도소득세)종합안내·신고안내정보 조회,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카드사대리납부조회·예정고지세액조회, (상속·증여세)결정정보 조회,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중간예납세액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등
			납부	• 납부내역조회,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등
		세무대리 정보	• 세무·신고대리 수입동의, 세무대리인조회, 세무대리인 해임, 신고대리정보이력조회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소득자료확인하기, (정기·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정기·반기)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주택등기준시가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등	
		기타	• (정기·반기) 소득자료확인하기, (정기·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정기·반기)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주택등기준시가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등	
민원 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365일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365일 06:00~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365일 24시간	
	대상 민원	한영 발급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소득금액증명	
한글 발급 (5종)		•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신청· 제출	이용 시간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365일 06:00~24:00 •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365일 06:00~24:00 • 일반세무서류 신청, 소비제세 신청, 거주자증명 등: 24시간	
		제출	• 각 자료에 대한 법정 제출기간 중 매일 06:00~24:00	
	주요 신청 종류	일반세무서류 신청	• 국세청의 모든 민원서류가 조회됨 • “신청구분” 인터넷 신청일 경우 홈택스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신청, 휴업 중 재개업신청 등		
소비제세 신청		• 개별·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면세미납세신청신고 등		

〈표 IV-1〉의 계속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신청·제출	주요 신청 종류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신청, 모범납세자 추천 등
		(정기·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신청접수내역조회, 첨부서류제출하기, 장려금 미리보기 등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송달장소(변경) 신고,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환급계좌개설, 징수유예신청,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 등
		기타 신청업무	• 전자고지 신청/해지, 세법해석, 불복신청, 민원서류발급제한, 외부위원지원서 제출, 사실증명신청,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일자리창출계획서, 민원증명발급예약 등
상담·제보	상담		•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문의사항 질의 시 전문상담관이 답변
	제보	제보 방법	•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탈세제보 종류	• 사업자차명계좌, 거짓(세금)계산서수수, 대부업자탈세, 학원비부조리신고센터,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위장 가맹점, 명의위장사업자, 부동산투기, 해외탈루소득, 해외금융계좌, 사이버탈세(수입누락·허위경비 등)

자료: 국세청 홈택스 메뉴(www.hometax.go.kr, 검색일자: 2023. 4. 8.) 및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상기 설명한 PC 홈택스 외에도 해당 사이트의 80% 가량의 기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 또한 운영되고 있음
- 언택트 시대에 맞춰 2019년 말 212종에서 2020년 말 700여종까지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함
 - 소비·원천세 등 6가지 세목의 모바일 신고와 불복청구 및 고충 민원과 같은 189가지의 민원 신청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장됨

〈표 IV-2〉 손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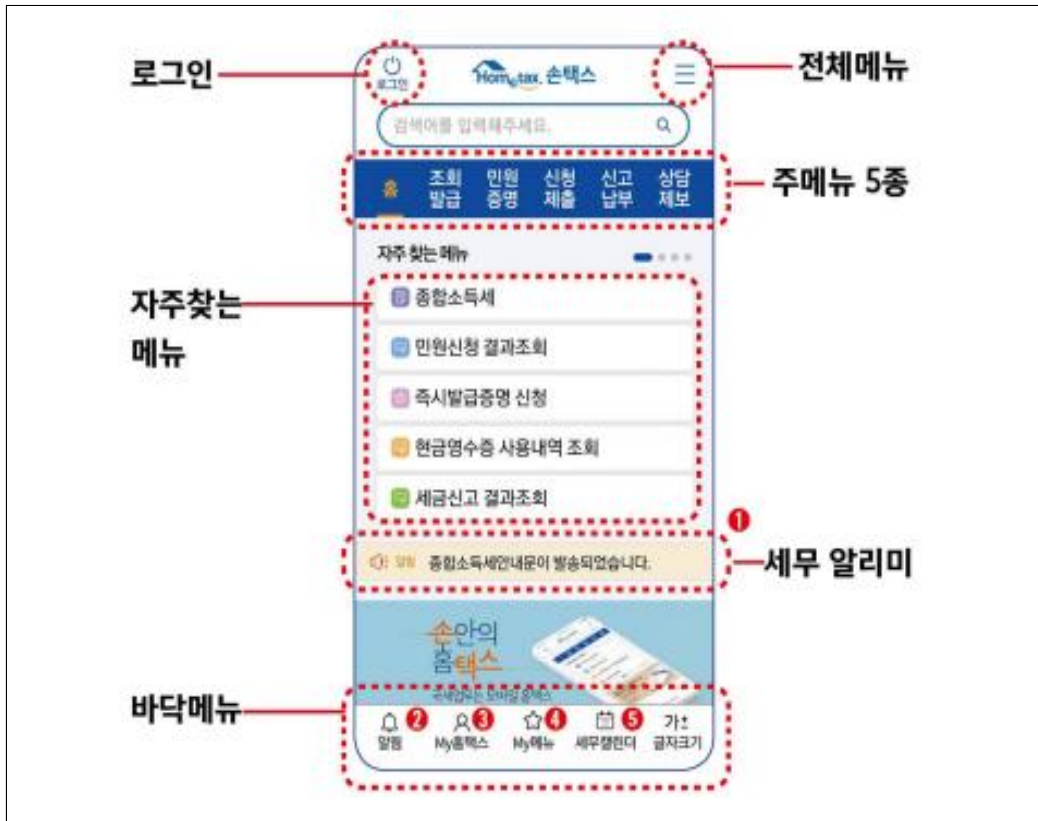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 목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전자고지열람,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등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환급금 조회 등
민원·증명	증명발급신청(14종), 사실증명신청(12종), 민원신청조회 및 팩스전송 등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휴폐업신고, 재개업신고 등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자진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등
상담·제보	탈세제보, 방문상담예약,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상담사례검색 등

자료: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에 관한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5. 3.

- 손택스의 기본 접속 페이지는 [그림 IV-1]과 같으며, 첫 페이지에서 주메뉴 5종과 자주찾는 메뉴, 알림메시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³⁴⁾
 - 손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세무 알리미 항목(①)에서 신고 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내역 등이 표시되며, 앱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민원신청 결과와 납세 안내 등은 앱 푸시나 쪽지로 발송되고 이 내용은 알림 항목(②)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My홈택스 항목(③)에서는 세금신고 및 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등의 세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즐겨 사용하는 서비스는 My 메뉴 항목(④)에 지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캘린더 항목(⑤)에서는 월별 세무 일정 등 개인별 세무 일정을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음

34)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이용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4. 8.

[그림 IV-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



자료: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이용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4. 8.

2) 지방세

- 현재 지방세의 경우 전국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가 이용 가능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택스 운영 전부터 독자적인 전자세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를 시행해온 바 있음
- 200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04년 부산시, 2005년 인천시 등이 행정안전부보다 먼저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 대구시도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함

가) 위택스(wetax)

-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통한 지방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위택스 시스템을 개발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³⁵⁾
 - 위택스 구축에는 2019년까지 338억원의 국비와 25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됨
 - 국비는 위탁운영비를 비롯한 시스템 구축비, HW 및 SW의 유지보수비로 사용됨
 - 지방비는 위탁운영비로 사용되며, 별도의 이택스를 사용하는 4개 도시 역시 2019년 현재 연간 5,500만원에서 3억원 가량의 위택스 위탁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
 - 위택스의 관리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택스 외에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등 다양한 지역 관련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위택스에서는 8개 지방세 세목과 세외수입에 대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환급 신청, 공무원 대행신고 외에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그림 IV-2] 참조)³⁶⁾
 -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함
 - 고지서 전자송달 및 문자 알림, 연납 및 분납, 자동납부, 대행인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사항 안내와 지방세 미리계산 등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함께 제공됨

35)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36)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검색일자: 2023.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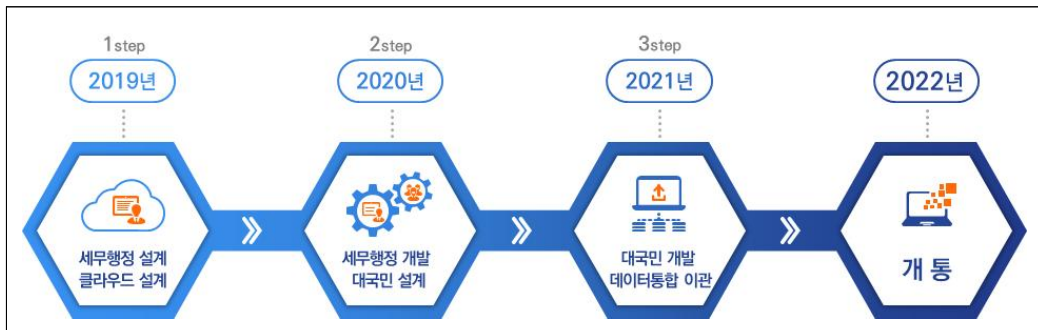
[그림 IV-2] 위택스 전체 메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공무원대행신고	
취득세 ·부동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제자 일괄조회 증명서 발급	환급금 간단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고지서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고지서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 신청 ·고지서 전자사서함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대행인 신청 ·위임자 승인	공무원대행신청 ·공무원대행신청 ·공무원대행신청확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조회 수납정보 조회 전자신고 통계 수납정보 통계 지방소득세 공무원인증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지방세외수입 ·총포 수수료 ·건설업등록 수수료	통합납부바구니 ·납부바구니 ·조회 ·납부확인	지방세 정보 세목별 안내 법령개정사항 안내 지방세 미리계산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 자료실	지방세 환급제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 환급제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신청 확인	문자알림 신청 간편납부번호 신청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신청이력 ·일반납부 변경신청	문자알림 신청 간편납부번호 신청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신청이력 ·일반납부 변경신청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대행인 관리 ·대행인 신청 ·위임자 승인 ·체납내역 조회 ·납부결과 조회	나의 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납부확인서 보관함 압류내역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 상하수도 수용가번호등록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조회 수납정보 조회 전자신고 통계 수납정보 통계 지방소득세 공무원인증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제조사 ·수입판매업자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 ·담배반출 신고 ·면세담배 ·공급신고 ·반출 전 ·신고·납부	지방세외수입 ·총포 수수료 ·건설업등록 수수료	지방세 정보 세목별 안내 법령개정사항 안내 지방세 미리계산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 자료실	은닉재산 신고 지방세 홍보캐릭터 전국 세무부서 찾기 BI 안내	지방세 환급제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 환급제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외수입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신청현황	지방세외수입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신청현황	체납 지방세 조회 대행신청 ·대행 신청 ·위임자 승인 ·체납내역 조회 ·납부결과 조회	나의 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납부확인서 보관함 압류내역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 상하수도 수용가번호등록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조회 수납정보 조회 전자신고 통계 수납정보 통계 지방소득세 공무원인증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수정·경정 ·수정신고 ·담배소비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청구 내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재센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재센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주민세 사업소분 대행신청 ·대행인 신청 ·위임자 승인			
자동차세 ·주행분											

자료: 위택스 홈페이지, 「전체메뉴」, <https://www.wetax.go.kr>, 검색일자: 2023. 4. 8. 내용을 저자 편집

-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3년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세무행정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³⁷⁾
 - 2019년 사업 시작 첫해에는 각 지자체의 전산장비 통합 관리와 중앙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2020년과 2021년에는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납세편의 서비스 개발과 함께 데이터를 이관하고 통합함
 - 2023년 초 개통을 목표로 2022년 세무 담당 공무원 교육까지 마쳤으나,³⁸⁾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2023년 6월 현재 개통 준비 중인 상태임

[그림 IV-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42, 검색일자: 2023. 6. 12.

- 위택스 역시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PC 버전과 함께 모바일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음

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42, 검색일자: 2023. 6. 12.

38) 『경상매일신문』, 「상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세무담당자 교육」, 2022. 10. 26.,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99567&part_idx=7, 검색일자: 2023. 6. 12.

- 일부 세목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하기, 증명서 발급, 환급신청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스마트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신고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PC 버전에서만 가능함
 - 부가서비스에서 각종 분할납부와 체납 관련 행정과 기타 대행 관련 업무 또한 PC 버전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표 IV-3〉 스마트 위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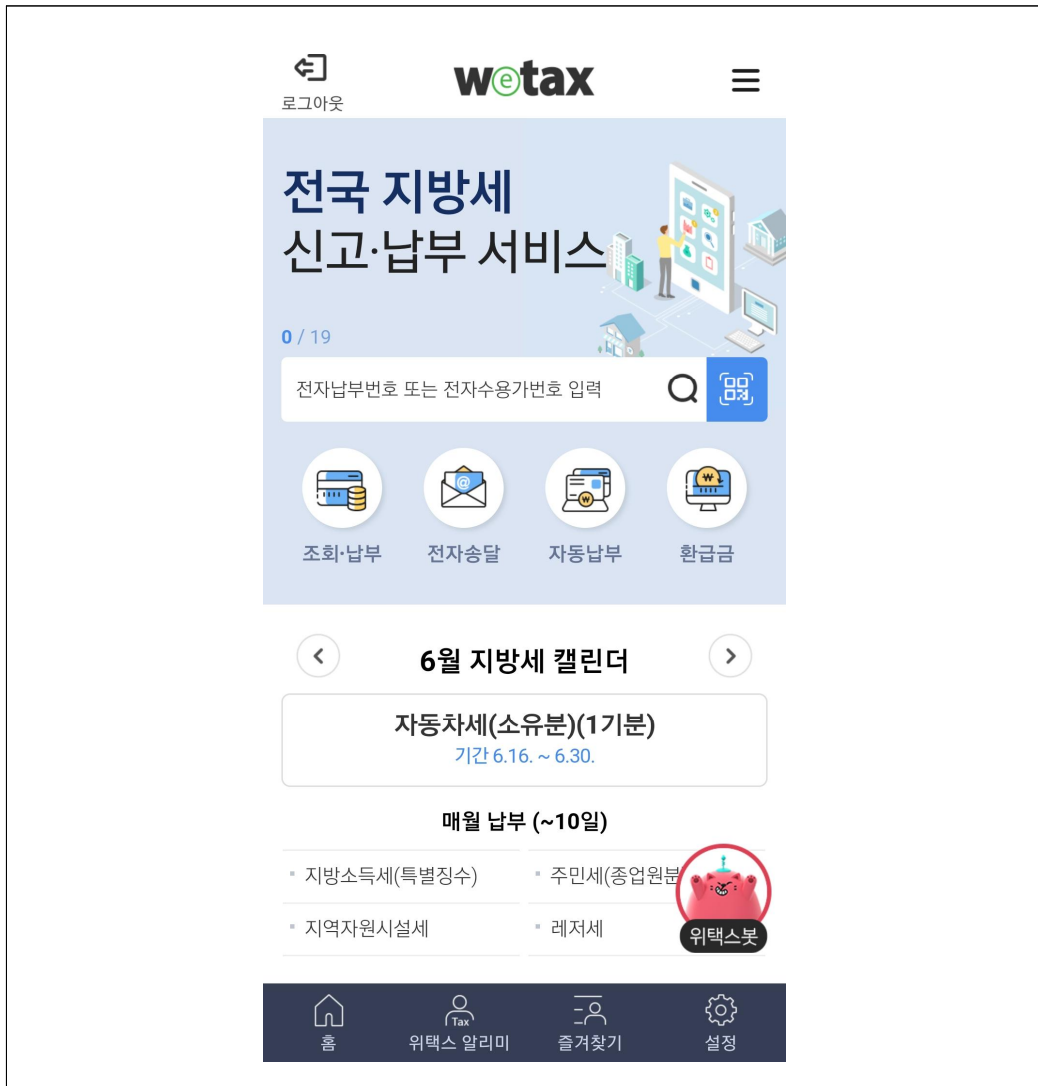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 목록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
증명서 발급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부가서비스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납부,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체납내역 조회
나의 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

자료: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내용을 저자 정리

- 스마트 위택스는 납세자의 이용 성향을 고려하여 간결한 첫 화면을 제공하고 있음
 - 서면 고지서를 송달받고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첫 화면 가장 상단에 전자납부번호 등의 입력이나 QR 접속이 가능한 검색 필드를 배치함
 - 또한 조회납부, 전자송달, 자동납부, 환급금 등 납세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들을 첫 화면 중앙에, 그 아래에는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한 지방세 캘린더를 두고 있음
 - 납세자들이 별도의 페이지를 찾지 않고도 문의가 가능하도록 챗봇(위택스봇) 바로가기를 첫 화면에 배치함

- 또한 바닥 메뉴의 위택스 알리미 항목에서 납세자 개인이 납부할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즐겨찾기 메뉴를 구성할 수 있음

[그림 IV-4] 스마트 위택스 첫 화면



자료: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 이택스(etax)³⁹⁾

- 서울시는 2001년 6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이택스 시스템을 마련함
 - 2019년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60만명이며, 서울시의 예산 없이 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 및 운영되고 있음
 - 2019년까지 기존 시 금고였던 우리은행이 총 328억 2,500만원, 2018년부터 복수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434억 1,4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음
 -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인 STAX도 함께 운영함
 - 2022년까지는 이택스 회원가입 시 지방세를 조회 혹은 납부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으며, 이 마일리지는 SSG머니나 마이신한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었음
 - 은행·카드사·간편결제사를 직접 연계하여 결제 수수료를 무료 혹은 최소화하였으며, 무인수납기 및 편의점 납부, 서울시 및 하위 자치구의 세입금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세입 수납 재해복구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음
 -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모두 영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음

- 부산시는 2004년 이택스 시스템을 개통하여 365일(00:30~23:30) 이용 가능한 부산 사이버지방세청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부산시 시 금고에서 2019년까지 총 14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함
 - 신용카드사와의 별도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로페이백을 제공하고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 기능도 도입함
 - 스마트폰 납부, 자치구 및 군 관공서 내 무인수납기와 편의점 납부가 가능하며, SKT의 전자송달 서비스도 제공함

39)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 4~8.

- 인천시는 2005년부터 납세자와 수납기관, 시 금고를 365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통해 이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4만 5천명이며, 2019년까지 시 금고가 160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됨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간편결제도 가능함
 - 서울시 및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무인수납기 납부가 가능하며, 인천시 및 하위 자치구·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각종 부담금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납부가 연결되어 있음

- 대구시의 이택스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도입 이후 2009년 이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위택스 안에 대구시 이택스를 끼워넣은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0만 5천명이며, 2019년까지 총 91억 9,900만원의 시 금고 예산이 투입됨
 - 신고는 위택스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없고 간편결제 역시 가능함

- 위택스와 일부 지자체의 이택스 시스템별로 실적을 비교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위택스가, 납부 금액은 서울시 이택스가 가장 높았음
 - 누적 가입자 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택스 시스템이 약 880만명으로 그 뒤를 잇는 서울시에 비해 약 3.4배 가량 많았으나, 납부 건수 및 신고 금액은 서울시 이택스가 위택스에 비해 각각 약 2.5배 및 1.3배 가량 높은 4,160만건과 약 2조 4,169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IV-4〉 2019년 기준 지방세 전자세정 시스템별 실적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누적 가입자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납부건수	납부금액	
위택스	8,758,849	16,952,496	22,475,964	16,379,335	18,825,460	
이택스	서울시	2,594,447	1,993,000	3,989,942	41,600,000	24,169,476
	부산시	540,390	160,574	109,800	11,407,737	4,817,351
	인천시	445,465	10,842	18,977	8,347,483	3,929,380
	대구시	104,747	위택스에서 신고		2,268,686	493,942

자료: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 4~8 각 표에서 발췌

다) 소결

- 행정안전부의 위택스와 별도의 이택스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다음 〈표 IV-5〉를 통해 비교함
 - 현재 각 지자체의 이택스 서비스는 위택스와 연계되어 위택스에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 다만 서울시의 단건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위택스에서 조회는 가능하나 납부가 어려워, 서울시 이택스에 별도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전반적으로 2021년 전자세정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에서 높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추가적인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경우 서울시 시 금고에서 2019년까지 762억원 가량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이택스의 국비 338억원과 지방비 250억원을 합한 금액보다 큼
 - 사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서울시 이택스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모바일 앱에서의 간편인증 사용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고 영문 페이지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존재함
 - 위택스보다 늦게 도입된 2009년 대구시 이택스는 위택스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IV-5〉 위택스 및 지역별 이택스 비교¹⁾

(단위: 년, 명, 원)

구분	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부산시 이택스	인천시 이택스	대구시 이택스
도입시기	2007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누적 가입자 (2019기준)	8,758,849명	2,594,447명	540,390명	445,465명	104,747명
예산 (2019기준)	국비 338억원 지방비 250억원	시 금고 762억원 위택스에 연 5,500만원 부담	시 금고 150억원 위택스에 연 3억원 부담	시 금고 161억원 위택스에 연 2억원 부담	시 금고 92억원 위택스에 연 2억원 부담
기능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신고 및 납부				
모바일	고지 및 납부	고지 및 납부	고지 및 납부	-	-
연결	-	이택스에서 위택스 연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납부 가능	납부 가능	납부 가능	-	-
간편결제 ²⁾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ARS납부	-	1599-3900	1544-1414	1599-7200	080-788-8080
전용 콜센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활용	1566-3900	051-888-5454 ~6	032-440-3061 ~2	053-803-2535
특이사항		신기술 활용 (간편인증으로 모바일앱 사용), 모바일앱 다국어 지원			위택스의 보완적 역할

자료: 1)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 9 표 발췌 및 일부 내용 업데이트

2) 사이트별 납부안내 페이지

3) 온라인 플랫폼 다중 체계의 연계 및 애로사항

가) 홈택스와 위택스

-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오다 지방세 독립 후 독자신고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부터 PC 버전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시 개인소득분에 대해 연계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⁴⁰⁾
-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내역 창에서 ‘신고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그림 IV-5] 참조),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가 더욱 쉬워짐

[그림 IV-5] 위택스의 기능



자료: 위택스 홈페이지, 「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 4. 29.,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54486>, 검색일자: 2023. 4. 8.

- 지방소득세 연계신고의 프로세스는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②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클릭, ③ 납세자 확인 절차, ④ 위택스 이동, ⑤ 과세 정보 필수항목 자동 채움, ⑥ 전화번호 입력, ⑦ 선택항목(세무대리인 등) 입력, ⑧ 신고 종료의 순서로 이루어짐

40) 위택스 홈페이지, 「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 4. 29.,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54486>, 검색일자: 2023. 4. 8.

- 또한 지방세정 시스템인 위택스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국세 행정 시스템인 홈택스에 비해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세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여 신고 및 납부 시 불편을 겪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존재함
 - 홈택스는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로 자동 인정되나, 위택스의 경우 기존 제출한 신고서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수정 제출 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또한 가상계좌 결제 등 납부 방법에서도 홈택스보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이 세무대리인 신고 시 불편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과 같이 일부 증명서는 세무대리인의 발급이 어렵고, 납세자 본인만 발급한 경우도 존재함

나) 위택스(전국 지방세 공통)와 이택스(서울, 부산, 인천, 대구)

- 2009년 서울시까지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위택스의 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택스와 이택스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택스에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
 - 이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시되어온 문제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애로사항은 해소된 상태임
 - 그러나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한 군데서만 단 건의 재산세 납세 의무가 존재할 때 위택스에서는 납부가 어려우며 서울시 이택스로 별도 접속하여 납부 처리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4호)」을 개정하여 지속해 추진해온 위택스와 이택스의 완전한 통합을 도모함⁴¹⁾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부칙 2조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

템(위택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은 2022년 2월 2일까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택스와 이택스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함

- 그러나 이택스 운영 지자체 중 일부는 통합에 이견을 보이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가장 오랜 기간 이택스를 운영해 온 서울시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함께 기존 제공되던 선진화된 서비스와 노하우가 매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외국어 페이지나 보다 다양한 간편결제 등 위택스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부산과 인천은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지역 특화서비스의 유지를 요청함

다) 국세청의 지방세 동시 납부 사례

-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지방세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과거 2008년경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인터넷으로 동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음⁴²⁾
- 국세 포털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 정보를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하는 방식임
 -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주민세 납부·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위택스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메뉴가 나타나며, 여기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전자납부를 진행할 수 있음

41)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 4~8.

42) 행정안전부, 「5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 실시: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간 납부 연계시스템 구축」, 2008. 5. 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X164sLNh7DAcjWwxbEVpgLRfijSePon8A1muYCBgOaoGKTFC97b1CW1jfK42Vk21.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5414, 검색일자: 2023. 4. 8.

- 위택스, 홈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가입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함
- 위택스 시스템이 보급된 전국 1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되었으며, 당시 별도의 이택스를 운영하고 있던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은 위택스와의 연계가 어려워 대상 지자체에서 제외됨

나. 현장 신고 창구의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현황

1) 통합민원실⁴³⁾

- 행정안전부는 2019년 각 시·군·구청에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확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함
-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설치하여, 통합민원실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여 처리하던 각종 인허가 업무와 세무 행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
- 과거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 신고가 가능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 지자체 신고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세무서가 없는 8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4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2019. 4.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07, 검색일자: 2023. 4. 8.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이용 사례〉

- ▶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였다.
 - A씨는 ①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 작성 → ②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④ 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 ▶ B씨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된 후에는 한곳만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국민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됐다.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2019. 4.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07, 검색일자: 2023. 4. 8.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먼저 설치되어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29개의 통합민원실을 추가 설치함(〈표 IV-6〉 참조)
- 2019년까지 설치된 31개소 외에도 2020년에는 19개의 통합민원실 추가 설치를 계획한 바 있으나, 2023년 현재 통합민원실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최근 정보는 확인이 어려움

〈표 IV-6〉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지역

지자체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		관할
시도	시군구	세무서	시도	시군구	세무서	시도	시군구	세무서	시도	시군구	세무서
2017년(2개소)			충남	부여군	논산	2020년(19개소)			전북	고창군	정읍
경기	양주시	의정부		예산군	예산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전남	장흥군	해남
	화성시	화성	전북	장수군	남원		서초구	서초, 반포		경남	장성군
2019년(29개소)			전남	무안군	목포	부산	진구	부산진	경남	진주시	진주
대구	달성군	동대구		영광군	서광주		울산	울주군		울산, 동울산	제주
부산	기장군	금정	구례군	순천	세종	본청		세종	경기	용인시	
	부산진구	부산진	문경시	상주			경북				김포시
울산	울주군	울산	고령군	서대구	경북	의성군		안동	화성시	화성, 동수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군위군			안동				강원
강원		부천시	부천	의성군	안동	충남	천안시	천안			
	강원	포천시	포천	봉화군	영주		충남	홍성군	홍성		
강원		정선군	영월	예천군	영주	충남		천안시	천안		
	충북	원주시	원주	김해시	김해		충남	홍성군	홍성		
충북		횡성군	원주	양산시	마산	충남		홍성군	홍성		
	충북	괴산군	동청주	창녕군	마산		충남	홍성군	홍성		
충북		증평군	동청주	고성군	통영	충남		홍성군	홍성		
	충북	진천군	청주				충남	홍성군	홍성		

자료: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2019. 4.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70307, 검색일자: 2023. 4. 8.

2) 『한국세정신문』, 「세무서·시군구청 없어도 ‘이상무’…‘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전국에 32곳」, 2020. 4. 2.,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203>, 검색일자: 2023. 4. 8.

□ 달성군청 내에 국세청 지역민원실을 운영해 오던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지역민원실을 2019년 8월 통합민원실로 확대하기도 함⁴⁴⁾([그림 IV-4] 참조)

44) 국회의원 추경호 국정감사 보도자료, 「추경호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 주문: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 되어야」, 2019. 10. 17., https://www.peoplepowerparty.kr/file_download?attach_file_id=FILE_000000000127224&file_sn=0, 검색일자: 2023. 4. 8.

- 행정안전부가 통합민원실을 계획하기 전 국세청에서도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전국 37곳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이미 지역민원실이나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해 온 바 있음
- 대구 달성군청 통합민원실은 행정안전부 통합민원실 설치 계획에 없던 지역으로, 지역의 요청으로 설치된 사례에 해당함

[그림 IV-6] 대구시 달성군 국세청 지역민원실의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사례



자료: 국회의원 추경호 국정감사 보도자료, 「추경호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 주문: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 되어야», 2019. 10. 17., https://www.peoplepowerparty.kr/file_download?attach_file_id=FILE_000000000127224&file_sn=0, 검색일자: 2023. 4. 8.

- 다만 통합민원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력 지원 및 정보 보안 등의 문제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어 추후 확대 여부는 미지수임
 - 세무서가 없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세무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추가적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또한 국세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들이 많은데, 아직은 통합민원실이 위치한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가 국세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움
 - 이러한 이유에서 통합민원실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국세청 시스템에 제한된 접근 권한만을 허용하고 있음

2) 기타 국세 및 지방세 오프라인 연계 행정 시도 사례

-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특정 세목이나 기간의 경우 지자체 혹은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세무 업무를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⁴⁵⁾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시·군·구청에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까지 포함)와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고 접수함을 설치함
 - 신고 접수함을 통한 신고는 ①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③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 ④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⑤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절차를 따름
- 2007년 재정경제부는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어 국세 및 지방세정책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를 꾀한 바 있음⁴⁶⁾
 - 당해 규정 제2조에 협의회가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2항에서 “부동산세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지원세제 등 국세와 지방세간 연계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제3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간사와 협의회 안건과 관련한 부처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명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협의회가 실제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음

45) 진천군청, 「개인지방소득세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908&mode=view&no=513969494>, 검색일자: 2023. 4. 8.

46)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규정」(시행 2007. 6. 21., 재정경제부 훈령 제160호) 제1조

2. 지방소득세 독립 후 쟁점

가. 경정청구 효력의 상호 인정 여부

- 과거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구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이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가 「국세기본법」에 의해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납세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직권 경정이 이루어졌음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⁴⁷⁾
 -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하면서 지방소득세 확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현 체계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 역시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임
 - 국세와 지방세의 경정청구 효력에 대한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따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시간적·비용적 비효율이 많이 증가함
 - 이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견이 존재함

47)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 심포지엄」, 2021. 4. 9.,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02650>, 검색일자: 2023. 4. 20.

- 이에 반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이나 공제도 대부분 같으므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상호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 문언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한 경정청구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환급되는 것으로 해석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 실무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소관부서인 납세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등에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⁴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환급처리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됨
 - 통상 소득세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결정됨
-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관하여, 법인세 환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판단에 전제함⁴⁹⁾
 -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처분청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임

48)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사례」, 2017. 4. 24., <https://call.nts.go.kr/search/search.jsp>, 검색일자: 2023. 4. 19.

49) 조심2015지0487 (2015. 6. 3.) 지방소득세 경정

-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인한 지방세환급금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규정⁵⁰⁾에 따라 해당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처분청이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나. 중복세무조사의 우려

-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⁵¹⁾으로 침익적 성격이 있음
 - 납세자의 탈세행위를 파악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성실 납세의 이행을 촉구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으나 권력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 또는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에 한계를 가지므로 세무조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세무조사가 가지는 침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세무조사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원칙^{52), 53)}이 적용되어야 함
-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던 과거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음

50) 「지방세법」 제97조 제2항

5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5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53)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내용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⁵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⁵⁵⁾
- 지방소득세가 독립하였으나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원인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표준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중복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
 - 현재 「국세기본법」⁵⁶⁾ 및 「지방세기본법」⁵⁷⁾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한해 동일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의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실시하고 있음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불복청구의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4) 「지방세법」 제97조

55) 「지방세법」 제103조의24

5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57)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주체가 국세청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당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현행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므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산정까지의 조사는 동일하여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음⁵⁸⁾
 - 세무조사 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혼란을 예상할 수 있음
- 지방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⁵⁹⁾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실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 과세당국과 협의 또는 조율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임
- 현행 제도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공유하고 있는데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 외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 세무조사의 대부분이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음
 - 국세 세무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을 근거로 국세 영역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58)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59) 『국세신문』, 「국세 과세표준을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조사로 검증?가능해?」, 2020. 7. 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13>, 검색일자: 2023. 5. 8.

- 국세와 지방세에 각 시행되는 세무조사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실시 전 국세청과 사전에 세무조사를 협의·조정하여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⁶⁰⁾
 - 각 과세기관에 의해 실시된 세무조사의 결과가 다를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에 차이가 생겨 과세기관 사이 권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 중복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세법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으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¹⁾
 - 중복세무조사 논란, 불안한 법률관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자주권만을 강조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⁶²⁾
 -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소득세가 공유하고 있고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된 신고내용의 검토 및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래부터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 국세청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과세표준의 산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전문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국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을 담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기본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심의 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63), 64)}

60) 『세정일보』, 「국세-지방세 중 ‘복세무조사’에 노출된 납세자들」, 2020. 12. 24.,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7>, 검색일자: 2023. 5. 8.

61) 정상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지방세포럼』, 통권 제23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 70~72.

6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63) 국회의원 심재철(「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2015. 7. 9.), 국회의원 조원진(「지방세기본법」, 2015. 7. 6.), 국회의원 정청래(「지방세기본법」, 2016. 5. 9.)

64) 『국세신문』,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만이 해법 아니다」, 2013. 5. 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492&replyAll=&reply_sc_order_by=C, 검색일자: 2023. 5. 8.

- 해당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정함
-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의 국세 세무조사와 일원화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권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표 IV-7〉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발의된 법률안

발의자	법률안	법안 내용
조원진의원 (2015. 7. 6.)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제5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부정
	「지방세법」 제97조, 제98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26,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십재철의원 (2015. 7. 9.)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개월 이내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의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 (제7조)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세무조사 금지
정청례의원 (2016. 2.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요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소득세/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한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 (제2·3항)연결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세무조사 필요성이 판단될 때, 연결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조사 요청 - 연결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조사를 요청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 의무 • (제4항)필요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

자료: 『국세신문』,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만이 해법 아니다」, 2016. 5. 9.,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492&replyAll=&reply_sc_order_by=C, 검색일자: 2023. 5. 8.

3.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정보 공유 관련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간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통해 마련되어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제18조 제2항의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시 취합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함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와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시 게재해야 하는 공고의 시기 및 내용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장부 및 문서 서식을 규정함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다.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④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⑤ 법 제33조제6항과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 ⑥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 ⑦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 ⑧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5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내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대상의 정의와 정보주체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제공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의 소극적인 정보 제공의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정보 요청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이나 결손액(정리보류)과 같이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함
 -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과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 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보안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신뢰의 부족, 정보 제공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 비용, 요청된 정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권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움⁶⁵⁾

- 다만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포탈협의를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⁶⁶⁾
- 2021년 5월 이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었음
 -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건이 완화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2013년부터 세무조사에 활용해 오고 있었음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정보, 고액 현금거래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이 외국의 금융정보 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위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받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정보가 제공됨
- 2021년 5월 20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조문 내에 국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⁶⁷⁾
 -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건이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 탈루에 관한 조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5) 문정욱,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 공유 저해 요인」, 『정보통신정책』, 제19권 6호, 2007, p. 13.

6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67) 마정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8.

V. 시사점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창구의 통합적 연계

가.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적 연계

-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에 사용되는 온라인 시스템들이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이택스(4개 지자체 지방세) 등으로 나뉘어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플랫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러한 완전한 통합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각 조직의 내부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의 홈택스와 위택스 시스템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비롯하여, 신규 시스템 개발에 소요될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임
 - 기존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비용 외에도 독립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확대 배치한 인력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 역시 존재함
 - 이 경우 홈택스로 위택스 및 이택스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발전된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겠으나, 국세청의 업무 가중과 함께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각 기관 간 소통 및 권한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다만 위택스를 지자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금도 각 지자체와의 소통과 납세자 상담 창구 일원화 문제가 언급되고 있음

- 시스템이 홈택스로 통합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대내외적인 민원 사항 해결이나 주기적인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의 3자 협력이 필요해지므로 소통과 업무 처리 단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 차선책으로 개별적인 운영을 유지하되 한 개의 사이트만 접속해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목록을 마련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음

○ 홈택스와 위택스, 이택스에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모두 나열한 페이지를 각각 생성하고, 이 페이지에서 각 세목에 링크를 연결하여 해당 세목의 신고 및 납부 페이지에 연결되게 함

-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구분하여 개별 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은 줄어 들 수 있으나, 연결 후에 여전히 시스템마다 별도의 로그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시스템의 적응을 위한 납세순응비용이 발생함

○ 이와 함께 연계 세목 신고 시 생성되는 링크 버튼의 적용 대상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위택스 페이지 링크 버튼이 생성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신고 완료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안내 문구를 표시할 뿐 납세자가 위택스 사이트를 따로 접속해 해당 세목을 직접 찾아 신고하고 있음

□ 이때 홈택스와 위택스, 이택스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더라도, 인터페이스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된다면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시스템별로 신고 및 납부 방법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학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유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메뉴 구성을 비롯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더 긴 시간 서비스를 구축해 온 홈택스보다 아직은 위택스가 기능과 서비스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존재함
- 현재 도입이 준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는 위택스의 서비스와 성능이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국세청과의 협조 등을 통한 기능의 제고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홈택스 혹은 위택스, 이택스에서 로그인 후 다른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이 자동 유지하는 기능까지 탑재한다면 각 시스템 간 전환이 통합된 형태에 가깝게 편리해질 수 있음
 -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이 가입자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입자 사전 동의 등을 비롯한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나. 현장 창구 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 통합민원실은 세무서가 위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지역 내 대표 지자체 청사에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음
- 국세청과 지방 정부가 전자 세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령층 및 농어민 납세자와 같은 정보서비스 취약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이용률까지 감안한다면 상설 현장 통합 창구의 확보 역시 온라인 시스템 통합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60대는 56.7, 70대 이상은 34.6의 수준에 이르렀으며,⁶⁸⁾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21.2%에 불과한 수준임⁶⁹⁾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41; p. 43.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51.

- 또한 농어민 역시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은 70.6,⁷⁰⁾ 인터넷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30%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⁷¹⁾
 -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일반 국민 전체를 종합하더라도 37.5%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68% 이상의 이용률을 보여준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서비스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⁷²⁾
 - 현재도 소득세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에 한해 구청과 같은 지역 내 대표 지자체 혹은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렇게 세무서와 지자체 청사에서 특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자체 청사에 한해 상시 운영한다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음
 - 다만 기존에 상설로 설치되었던 통합민원실들 또한 세무서 측의 파견 인력의 부족과 국세 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한계는 존재함
- 이 밖에도 지자체 방문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상시 비치된 신고 접수함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무서 내 소득세 신고 서류 비치 장소 신고 접수함에 접수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함께 비치하거나, 신고접수함을 창구 근처에 두어 납세자에게 노출 빈도를 높이고 창구 담당자의 안내를 쉽게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신고 접수함 역시 모바일 메시지나 세무서 내 안내문과 창구 담당자의 안내와 같은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 접수함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음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41; p. 43.

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51.

72) 상동

다. 위탁 및 통합징수 가능성의 검토

- 지방소득세와 같이 국세에 유사 중복성이 높게 나타나는 세목의 경우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거나 국세 징수와 통합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지방소비세까지 일괄 징수 후 지방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독립 전 지방소득세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납세자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된 세금을 지자체의 인구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성격이 강함
- 이 밖에도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고지, 수납, 체납을 건강보험에 위탁하여 통합징수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⁷³⁾ 현행 지방소득세 징수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됨
 -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2008년 위탁 결정 후 각 공단의 노사정 합의,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 보험의 자격관리, 부과, 급여 업무는 각 공단에서 유지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부과하는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징수 방식을 취한 바 있음⁷⁴⁾
 - 납세자는 하나의 연방과 주 정부의 개인소득세가 통합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 정부 세금을 연방 세금의 백분율로 계산하여 통합 납부함
 - 이때 연방 세금에 대한 백분율은 주마다 세율 설정 권한이 있어 납세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회보험징수통합」,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7&PAGE=7&topTitle=, 검색일자: 2023. 6. 12.

74)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 114.

- 연방 정부는 해당 연도의 예상 세액을 주 정부에 사전 지급하고 모든 세금 신고서가 접수된 후 최종 조정을 계산함

- 다만 독립세로의 전환이 이제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징수업무를 위탁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제도가 지닌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시일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 주권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징수권을 얻자마자 관련 업무를 다시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음
 - 독립된 징수를 통해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의 지위를 납세자들에게 확립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 및 활성화

- 국세와 지방세 행정의 연계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 존재한다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의 협업을 보다 수월하고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음
 - 컨트롤 타워 조직이 국세와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공통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전략을 구상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컨트롤 타워 조직이 상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두 기관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 역시 수행함으로써 원만한 협업을 가능하게 함
- 이때 재정경제부 훈령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설치 목적과 기능, 구성이 규정된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컨트롤 타워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는 국세 및 지방세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국세 및 지방세정책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조직임⁷⁵⁾
 - 운영 규정의 제2조 2항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연계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또한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는 2007년 훈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는 하나,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직을 신설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한시적이고 제한적 수준이기는 하겠으나 다양한 범주의 국가 및 지자체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협의체 활용 가능성 역시 모색해 볼 수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⁷⁶⁾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22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함⁷⁷⁾
 - 광범위한 의미에서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에 필요한 정책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지방협력위원회는 위낙 광범위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라기보다 두 기관이 합의 과정에 있는 개별 정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협의 기구에 가까울 것으로 보임

75)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1조

76)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로(「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분기별로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함(「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77) 「지방자치법」 제186조 제1항

3.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의 일원화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서 국세 과세표준의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소득세의 경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가 동 시간에 각각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과거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구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이기 때문에 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및 세무조사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또는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경정 및 세무조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음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실현을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무조사권⁷⁸⁾ 및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검사권⁷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⁸⁰⁾
- 국세와 공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정 및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을 통해 납세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은 납세자가 따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8)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6조

79)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80)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현 구조에 관하여 납세자는 실질적으로는 중복세무조사라고 체감할 수 있음
 - 중복된 절차를 요구하는 경정청구 또는 이중으로 시행되는 세무조사는 법적인 정성 및 납세자의 영업 자유를 저해하고 납세 비용의 상승을 야기함
-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 문언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표준 경정에 의해 국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환급되는 것으로 해석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⁸¹⁾
 - 현재 실무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소관부서인 납세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등에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⁸²⁾
- 국세 과세표준의 경정에 따른 환급뿐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적용에 의한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으로 인한 국세 환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환급해줄 필요가 있음
- 납세자는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인지 여부와 구분 없이 신고한 세금에 대한 경정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환급받기를 원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실시한 감면·공제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공제가 존재하는 경우, 국세 특례와 동시에 적용된 지방세 특례상의 공제·감

81)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82)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사례」, 2017. 4. 24., <https://call.nts.go.kr/search/search.jsp>, 검색일자: 2023. 4. 19.

- 면에 관하여는 국세에 대한 경정 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져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소득세법」⁸³⁾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비를 지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⁸⁴⁾에 의해 해당 의료비 지출 금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도 공제되므로 해당 개인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례 적용을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로 국세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를 따로 이행해야 한다면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해 납세자의 피로도가 증가함
 - 실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인한 국세의 환급을 인지하는 경우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직권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음
 - 다만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환급절차상의 단순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제·감면 정책의 적극적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동일한 과세표준에 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는 현 체계로 인해 납세자의 영영이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짐⁸⁵⁾
-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거나 세법의 해석을 달리할 경우, 국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고 납세자는 각 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8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2항

85)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전국에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연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하여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재 경정하게 되면 사업장별로 추징·환급이 발생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경정하게 되면 장기간의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확한 조세법률관계의 확정에 문제가 발생함⁸⁶⁾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는 납세환경의 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경영활동 활성화를 통해 도모될 수 있으므로 납세환경 개선의 방안으로 세무조사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무조사는 과세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정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제한을 반대함⁸⁷⁾

- 중복되어 실시되는 세무조사 및 기관 간 해석 불일치로 인한 납세순응비용 증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만을 옹호할 수는 없음
 - 전국에 소득원을 가진 납세자는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86) 임동원·전병욱,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5권 제6호, 법조협회, 2016, pp. 274~311.

87) NTN, 「국세 과세표준을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조사로 검증? 가능해?」, 2020. 7. 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13>, 검색일자: 2023. 6. 2.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독립은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납세자의 고통이 발생하고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현 구조의 납세환경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질문검사권⁸⁸⁾, 89), 90)에 근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 질문, 장부,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⁹¹⁾

- 과세표준이 지방세 독자적인 것(주민세 균등할 및 사업세 부가가치할·자본할·수입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경정함
- 그러나 과세표준이 국세에 준거하는 것(주민세 법인세할 및 법인사업세 소득할)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그 후, 당해 세무서의 경정·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방식임
 -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법인세 경정·결정에 관한 자료로만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함
- 지방세 세무조사 시 국세 세무조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납세자에게 중복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임

□ 일본의 구조를 참조하여 현재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유되고 있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이 아닌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합하여 국세청이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88) 「지방세법」 제26조(도부현민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89) 「지방세법」 제72조의7(사업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90) 「지방세법」 제298조(시정촌민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91) 김태호, 『일본의 지방소득세제』, 해외지방세제도 시리즈 1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 pp. 16~40 재인용

- 앞서 <표 III-6>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통 특례 항목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각 법의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세금 면제·감면·공제에 관한 세무조사 시 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도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세청이 가지는 이유는 국세청이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인력의 충원이 쉽고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⁹²⁾
- 현행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와 공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아닌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결정·경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9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4.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방안 마련

- 2023년 1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납세자의 다양한 과세 정보 공유를 모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됨
 - 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인 과세 정보 공유 외에도, 앞서 다룬 국세세무조사, 경정청구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후 언급할 다양한 정보 공유 체계들이 본 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정 및 세무조사 결과가 통일성을 가지고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소득세에 즉시 반영되어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국세청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연속적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거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 차이를 방지할 수 있음
 - <표 III-6>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교표에서 확인되듯, 법인과 달리 개인의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공통하여 적용되는 특례사항이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처분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2021년 5월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제공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던 납세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해당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이력, 수집 증거, 세무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여전히 기관 간 공유를 명시한 규정이 없음
 -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동일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일 뿐, 국세청이 과세표준의 경정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공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정보 공유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관련 정보 확보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만큼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체납액 및 결손액 등의 정보를 비롯한 국세청에서 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제된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보 취득 방법이 될 수 있음
-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협력비용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실시간으로 과세표준의 경정 여부, 세무조사 실시 여부, 보유한 과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의 자동 알림을 통해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이 예정된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어야 함
 - 국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경정에 제출된 자료를 공유하여 각 기관의 경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타 기관이 확인하고 경정 전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세무조사 실시 여부, 수집된 증거, 세무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진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연속적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실시 여부, 수집 자료,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의 불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 실시 전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 관할이 다른 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실시를 전산망에 예고하여 조사 시작 전 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미리 구하거나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드는 시간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수집된 증거를 전산망에 공유하여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전산망에 공유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누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이 전산망에 등록한 세무조사 결과를 등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 전 지방자치단체의 경정 요청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음
- 납세자는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된 자료 제출 및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고 경정 결과 및 세무조사에 대하여 기관 간 검증 절차가 추가되어 처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음
-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제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 간 국민 개인정보 공유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납세자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의 자료 수집 시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미리 받는 방법이 있음

-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각 호에 '세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해당 조항이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납세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법인 「내국세법」에서 세금 신고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 세무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 정부와 미국 국세청 간에 공식적인 정보 공유 계약 또한 존재함⁹³⁾
 - 미국의 납세자가 연방 소득세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조치는 자동으로 주 세무 당국에 전달되며, 반대로 주 소득세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함
 - 더불어 이러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또한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⁹⁴⁾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⁹⁵⁾
- 세무조사 기법에 대한 모형 개발과 같이 세무조사를 매뉴얼화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으로 제공해야 함
 - 매뉴얼화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절차 진행에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
 -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93)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 117.

94) Internal Revenue Service(US), Tax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 for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1973.

95) 전동훈, 『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1.

5. 향후 논의사항

- 본 연구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에 논의하였으나,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해당 방안들은 주로 납세자 편의 혹은 행정 효율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이나 이해관계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함

- 또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행정적인 쟁점 외에도 앞서 언급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관계와 같이 제도적 쟁점 또한 존재하고 있음
 - 향후 제도 측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이렇게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나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인해 중복적 혹은 이원적 성격을 지니는 세목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이들이 정당성이 결여된 이중과세에 해당할 경우, 본 보고서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해당 세목의 통합이나 일부 세목 제거와 관련한 방안까지도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 김태호, 「일본의 지방소득세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지방세제도 시리즈 1권, 2017.
-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 마정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문정욱,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 공유 저해 요인」, 『정보통신정책』, 제19권 제6호, 2007, pp. 1~17.
- 오연천, 「지방교육세 신설구상의 접근구도와 설계방향」, 『행정논총』, 제27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89, pp. 2083~2099.
- 유재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pp. 889~898.
- 윤상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정책과제 2019-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임동원·전병욱,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5권 제6호, 법조협회, 2016, pp. 274~311.
- 전동훈, 『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정상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지방세포럼』, 통권 제23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 70~72.

정지선·윤성만·최천규,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2015, pp. 161~19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60년사: 제1권 연대사』, 2017.

한재명·김민정,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쟁점과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 79~110.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재정세제실, 등록번호 2013-91, 2013.

황영현,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에 관한 소고」, 『계간세무사』, 제140호, 2014.

Bell, Michael E. and Joanna Regulska,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The Case of Financing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in Poland,” *Public Finance in a Worl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Forty-Seventh Congre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vol. 47, 1992, pp. 187~201.

Internal Revenue Service(US), *Tax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 for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1993.

Liberati, Paolo and Agnese Sacchi, “Tax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157(1/2), 2013, pp. 183~205.

McLure, C. E., “Tax assignment problem: conceptual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in achieving sub-national fisc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1998.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2. 법령

「개별소비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증권거래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3. 판례 및 결정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 조심2015지0487(2015. 6. 3.)

4. 웹사이트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민의힘, <https://www.peoplepowerparty.kr>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307830554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ikms.assembly.go.kr>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s://etax.daegu.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의정부시청, <https://www.ui4u.go.kr>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

진천군청, <https://www.jincheon.go.kr>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정연구 23-03

납세자 중심의 국세와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발 행 2023년 7월 31일

저 자 정훈·박하얀·이나현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044-866-6331

I S B N 979-11-6655-226-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23-03

납세자 중심의 국세와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2023. 7.

정훈 · 박하얀 · 이나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공동연구원

박하얀 세정연구팀 연구원

이나현 세정연구팀 변호사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현황	4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및 비중	4
가. 조세 체계	4
나.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	7
2. 신고 및 납부 시스템	8
가. 신고	8
나. 납부	9
3.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11
III. 지방소득세의 독립지방소득세로의 전환	14
1. 조세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검토	14
2. 지방소득세 독립의 배경 및 의의	16
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징수 방식의 변화	20
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교	23
5.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27
IV.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현행 과세 행정의 검토	30
1. 다원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	30
가. 온라인 플랫폼 상세 현황 및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시도	30
나. 현장 신고 창구의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현황	48

2. 지방소득세 독립 후 쟁점	53
가. 경정청구 효력의 상호 인정 여부	53
나. 중복세무조사의 우려	55
3.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정보 공유 관련	60
V. 시사점	66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창구의 통합적 연계	66
가.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적 연계	66
나. 현장 창구 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68
다. 위탁 및 통합징수 가능성의 검토	70
2.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 및 활성화	71
3.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의 일원화	73
4.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방안 마련	79
5. 향후 논의사항	83
참고문헌	84

표 목차

〈표 II-1〉 국세의 종류	4
〈표 II-2〉 지방세의 종류	6
〈표 II-3〉 지방세의 세목별 운영 주체	7
〈표 II-4〉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방법	10
〈표 II-5〉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	12
〈표 III-1〉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18
〈표 III-2〉 「지방세법」상 규정된 과세표준	21
〈표 III-3〉 「지방세법」상 규정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1
〈표 III-4〉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22
〈표 III-5〉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23
〈표 III-6〉 조세특례 및 지방세특례의 의의	24
〈표 III-7〉 국세와 지방세의 소득세 조세지출 적용 비교	25
〈표 III-8〉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29
〈표 IV-1〉 홈택스 주요 메뉴 및 기능	30
〈표 IV-2〉 손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34
〈표 IV-3〉 스마트 위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39
〈표 IV-4〉 2019년 기준 지방세 전자세정 시스템별 실적 현황	43
〈표 IV-5〉 위택스 및 지역별 이택스 비교	44
〈표 IV-6〉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지역	50
〈표 IV-7〉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발의된 법률안	59

그림 목차

[그림 II-1] 국세 및 지방세 비중(1971~2021)	8
[그림 III-1]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18
[그림 IV-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	35
[그림 IV-2] 위택스 전체 메뉴	37
[그림 IV-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38
[그림 IV-4] 스마트 위택스 첫 화면	40
[그림 IV-5] 위택스의 기능	45
[그림 IV-6] 대구시 달성군 국세청 지역민원실의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사례	51

I. 서론

-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을 함께 제정하며 정부 수립단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정부의 세제 및 재정 분리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¹⁾
- 그러나 도입 직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짐
 - 지방자치제도 첫 도입 시 자체 세입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한국전쟁과 행정부 최고 수장의 중앙 집권 의지 등으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1961년 발발한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전면 중단됨
- 이후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도입되면서,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2011년에는 「지방세법」만 존재하던 과거에서 국세 관련법과 유사하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을 분리함으로써 더욱 형식을 갖추게 됨
 - 기존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운영되던 징수 업무 또한 2015년 개정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기 시작함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운영을 자립해 가는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시스템 역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함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원화된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짐

1)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60년사: 제1권 연대사』, 2017, p. 92.

- 현재 현장 창구의 경우 납세자들이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 청사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해야 함
-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이택스(지방세) 등으로 다원화되어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의 별도의 협력비용이 요구되고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위해 각 온라인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탐색하여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신고 및 납부를 번거롭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를 위해 3개의 시스템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일부 납세자가 존재하기도 함
- 또한 국세인 소득세와 통합되어 징수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 세제로 개편됨에 따라 분리된 행정 사항들과 관련한 쟁점들이 등장함
 - 지방소득세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0년부터 독립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신고 및 납부되던 과거에 비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됨
 - 이 밖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환급을 비롯하여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리적 해석 등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발생시켜오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한 신고 및 납부 창구에 대한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득세 독립과 함께 발생한 행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제도에서의 납세협력과 조세 행정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실체법적 제도 그 자체나 세원 또는 세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님
 -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체계와 신고납부 시스템,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를 정리함

- 제3장에서는 지방소득세 독립과 관련하여, 그 배경과 의의, 그로 인해 발생한 징수 방식의 변화와 함께 독립세 과세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봄
- 제4장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세부 사항 및 연계 현황을 비롯하여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해당 쟁점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현황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및 비중

가. 조세 체계

-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13개 세목을 국세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13개 세목이 이에 해당함
- 조세는 일반 예산에 편입되는지 사용 목적이 특별히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3개 세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표 Ⅱ-1〉 국세의 종류

사용목적	세목 ¹⁾	과세대상 및 세율
보통세	소득세 ²⁾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6~45%의 누진세율로 부과
	법인세 ³⁾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9~24%의 누진세율로 부과
	상속세 ⁴⁾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는 국내 한정)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부과
	증여세 ⁵⁾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부과
	종합부동산세 ⁶⁾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의 초과액에 대해 주택 0.5~2.7%(3주택 이상 소유 시 0.7~5%), 토지 1~3%(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0.5~0.7%)의 누진세율로 부과

〈표 II-1〉의 계속

사용목적	세목 ¹⁾	과세대상 및 세율
보통세	부가가치세 ⁷⁾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
	개별소비세 ⁸⁾	보석 및 시계, 모피, 고급 가구, 담배, 자동차 및 석유 제품, 유흥업소, 골프장과 경마장 등의 입장 행위 등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하게 부과
	주세 ⁹⁾	주정, 발효주, 증류주 및 기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 반출하거나 이를 위탁한 자나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주종별로 상이하게 부과
	인지세 ¹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서의 종류와 표기된 가액에 따라 100원에서 35만원의 세액을 부과
	증권거래세 ¹¹⁾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0.35%(2021~2022년에 한해 0.43%)의 세율로 부과
목적세	교육세 ¹²⁾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과세액의 10~30%를 부과
	농어촌특별세 ¹³⁾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증권의 양도가액, 개별소비세·취득세·레저세·종합부동산세 세액의 10~30%를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 ¹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각각 리터당 475원과 340원의 세율로 부과

- 자료: 1) 「국세기본법」 제2조
 2) 「소득세법」 제4조, 제55조
 3) 「법인세법」 제4조, 제55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6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6조
 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7)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0조
 8) 「개별소비세법」 제1조
 9) 「주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10)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1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8조
 12) 「교육세법」 제5조
 1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지방세는 지자체가 상하수도, 생활환경개선, 청소, 도로, 소방과 같은 지역 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의 충당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재산, 그리고 수익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임²⁾

2)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알기쉬운 지방세」, <https://etax.daegu.go.kr/local/info/easy>, 검색 일자: 2023. 4. 8.

- 지방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총 11개 세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2〉 지방세의 종류

사용목적	세목 ¹⁾	과세대상 및 세율	
보통세	취득세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1~12%의 세율로 부과	
	레저세	승자 투표권이나 승마 투표권 발매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	
	지방소비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총액)의 21% 부과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의 자본금 및 출자액에 따라 5만~20만원,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을 부과
		종업원분	월평균 종업원 급여총액이 1.5억원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에 부과
	담배소비세	제조 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에 대해 담배 종류와 양(개비수 혹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26~1,007원의 종량세를 부과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대상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는 0.6~5.5%, 법인지방소득세는 0.9~2.4%의 누진세율로 부과	
	자동차세	일반 자동차 및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해 배기량·전기차 여부·사용목적(영업용)·크기에 따라 차등 과세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0.1~0.5%(골프장·고급오락장은 4%, 고급선박은 5%)의 세율로 부과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등기의 등록 당시 가액이나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의 채권액에 대해 등기 및 등록 종류에 따라 정률 혹은 정액으로 상이하게 과세
면허분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지자체 규모를 반영하여 4,500~67,500원을 부과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과 같은 특정자원이나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에 대해 채취한 자원량이나 시설의 생산량 등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 대상 세목에 따라 세액의 10~43.99%를 부과	

자료: 1) 「지방세기본법」 제7조

2)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구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검색일자: 2023.

5. 3. 각 항목 내용을 저자 정리

-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목은 앞서 제시한 11개 세목으로 동일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도,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따라 하위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구)와 세목을 분담 운영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표 II-3〉 참조)

〈표 II-3〉 지방세의 세목별 운영 주체

사용 목적	세목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
		특별(광역) 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특별자치 시(도)세
보통세	취득세	○		○		○
	레저세	○		○		○
	지방소비세	○		○		○
	담배소비세	○			○	○
	주민세	○	△ ¹⁾		○	○
	지방소득세	○			○	○
	자동차세	○			○	○
	재산세		○		○	○
	등록면허세		○	○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교육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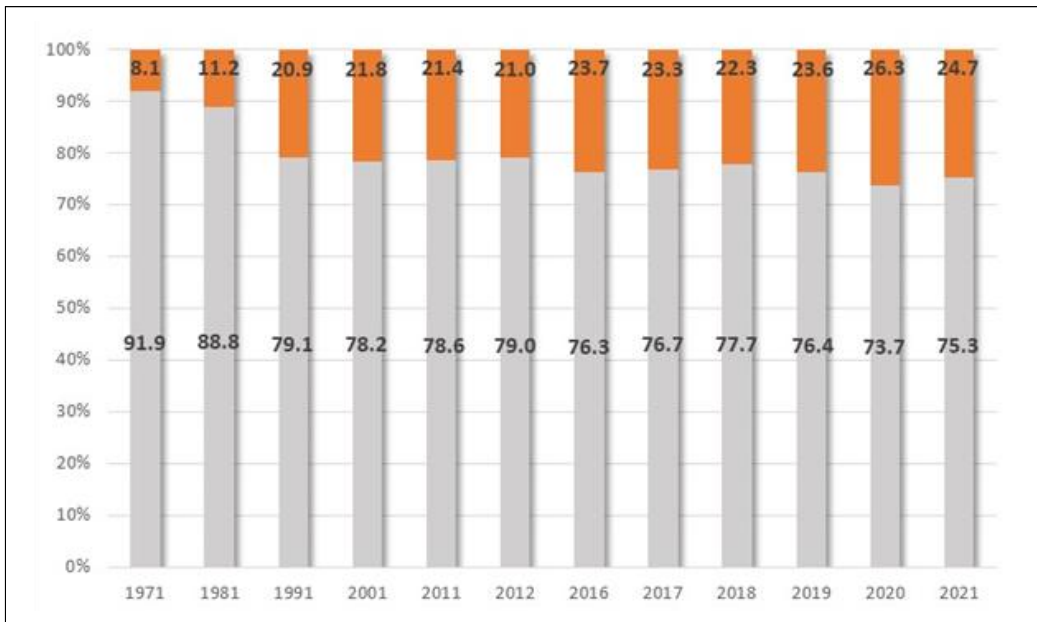
주: 1)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함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내용 저자 정리

나.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

-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주권이 점차 확대되며 1990년대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30여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II-1] 참조)
- 지방세 비중은 1971년 8.1%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91년에는 20.9%까지 증가하였음

- 1990년대 이후로는 2010년 초반까지 21% 내외를 머물다가 2010년 중반 이후 지방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여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23%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24%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1] 국세 및 지방세 비중(1971~2021)



자료: e-나라지표, 「국세 및 지방세 비중」,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검색일자: 2023. 4. 8. 자료를 저자 재구성

2.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가. 신고

- 최근의 국세 신고는 대부분 국세 포털인 PC 홈택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홈택스에서는 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증명, 확인, 납부, 부가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 이 밖에도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세무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가 가능함
 - 신고 서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신고를 확대하고 세무서 신고 창구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음
- 지방세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가 존재하며, 일부 개별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전자지방세정 시스템을 사용해 오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택스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세정업무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음
- 위택스를 통해 전국 모든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의 상세 기능은 이어지는 장에서 홈택스와 함께 다룸
 - 이 밖에도 납세자의 소재지 근처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나. 납부

- 국세와 지방세는 크게 관공서 방문,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납부 방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일부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존재함
- 국세의 현장 방문 납부는 세무서나 은행에서 가능한데, 세무서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한 무인수납창구가 상시 운영되고 유인 창구는 현금 수납에 한해 수납 집중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됨
 - 지방세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시청 민원실 내에 있는 무인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납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거의 유사하나, ATM 납부 시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은행 점포 내 무인공과금기는 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포털인 홈택스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서도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음
- 자동 납부는 지방세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 <표 II-4>에 기재함

<표 II-4>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관공서 방문	창구	세무서 • 현금수납 창구만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등 수납집중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인수납창구 이용	주민센터 •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일괄 납부 • 타인 신용카드일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단건 납부
	무인수납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 고지서 내 QR 코드 스캔하거나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만 가능	시청 민원실 무인수납기 • 신용카드, 본인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창구	• 납세고지서 지참 필요 •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ATM	• 전자납부번호 입력	• 현금카드(통장)로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무인공과금기	• 은행별 ATM 이용 시간 내 가능 • 계좌이체(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 은행 점포 내 위치 •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별로 이용 시간이 상이 • 각 금융사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국세납부' '지방세납부' 등의 메뉴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하는 방식	
인터넷	홈택스 • 07:00~23:30 중 납부 가능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	위택스 • 07:00~23:00 중 납부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표 II-4〉의 계속

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인터넷	지로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각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국세입금 메뉴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지방세입금 메뉴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	-	• 전 금융기관, 시청 세정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신청 •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 결제로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 정기 과세되는 세목에 한해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건당 500원 공제

자료: 1) 국세청 블로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tscafe/223078305547>, 검색일자: 2023. 4. 8.
 2)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4&cntntsId=7741>, 검색일자: 2023. 4. 8.
 3) 의정부시청, 「납부방법」,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204120100>, 검색일자: 2023. 4. 8.

3.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각 지방세와 국세 중 일부 세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등 상호관계성이 존재함
 -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기타 상황의 해당 세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데, 과세대상 세액 중 취득세와 레저세, 등록면허세가 포함됨³⁾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과세표준에 25.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안분되고 있음⁵⁾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4) 「지방세법」 제69조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동일하며,⁶⁾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함⁷⁾
- 이때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해야 함⁸⁾
- 지방소득세는 현재 국세인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국세세율의 10% 수준에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제로 개편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신고부터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룸

〈표 II-5〉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

세목	세율
농어촌특별세(국세) ¹⁾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이자 및 배당 소득 감면액의 10%
	개별소비세액의 10%(사치성 물품) 혹은 30%(골프장 입장)
	증권거래액의 0.15%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지방소비세 ²⁾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의 25.3%
법인·개인 지방소득세	2014년부터 독립세제로 개편되기 전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의 세율로 부과되었으며, 독립 후에도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 중

주: 밑줄은 지방세, 기울임체는 국세에 해당함

자료: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구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검색일자: 2023. 5. 3.

5) 「부가가치세법」 제72조

6) 「지방세법」 제67조

7) 「지방세법」 제68조

8)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 이 밖에도 유사한 목적 혹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중복으로 과세되고 있는 세목이 존재함
 -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의 경우 모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각각 국가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임⁹⁾
 - 교육세는 국세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¹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함¹¹⁾
 - 지방교육세는 본래 1982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되었던 교육세 운영 기한의 만료를 대비하여 기초적 교육재원 조달방식으로 구상이 시작된 세목이었음¹²⁾
 - 그러나 1991년 교육세가 이용시한을 폐지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 조세는 중복 과세의 성격을 지니게 됨¹³⁾
 -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실시되면서 그 과세대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로 설정됨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 바 있음¹⁴⁾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과거에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게 됨
 -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액 공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선고를 받음에 따라 공제 산식이 일부 변경되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으며 완전한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9) 「교육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49조

10) 「교육세법」 제5조

11) 「지방세법」 제151조

12) 오연천, 「지방교육세 신설구상의 접근구도와 설계방향」,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제27권 제2호, 1989, pp. 83~99.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교육세법([시행 1991. 1. 1.] [법률 제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27&ancYd=19901231&ancNo=04279&efYd=1991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14) 한재명·김민정,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쟁점과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 81.

Ⅲ. 지방소득세의 독립지방소득세로의 전환

1. 조세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검토

- 지방 분권화된 조세 행정 시스템은 조직 구조 및 인사 관행과 관련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함¹⁵⁾
 -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수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 공무원 및 의회가 더욱 유연성 있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여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 특정 과세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보다 강점을 지님
 - 예를 들면,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 공무원들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관련 규제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 분권화는 지방 정부의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약화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며,¹⁶⁾ 과세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을 통한 분권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Liberati(2013)는 실증 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재원 조달 시 지방의 지출이 증가하고, 한정적 상황에서만 조세 분권화를 통해 지출이 감소한

15)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 115~116.

16) McLure, C. E., "Tax assignment problem: conceptual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in achieving sub-national fisc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1998; Liberati, Paolo, Agnese Sacchi, "Tax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157(1/2), 2013, p. 184 재인용

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¹⁷⁾

- 다만 이러한 지출 감소의 결과는 조세 분권화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는데, 세원을 공유하는 세금이 아닌 세원이 분리된 경우에 적용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최근 분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분권화 추진과 함께 개선을 고려해야 할 한계점 역시 분명 존재함¹⁸⁾
 - 중앙 정부 외에 여러 수준의 정부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각 정부는 고유한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음
 - 이로 인해 업무와 인력의 중복이 발생하고, 납세자들에게는 각 정부의 서로 다른 형식과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준수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그리고 일부 지방 정부의 경우 자원 제약에 기인하여 다양한 세무 행정 기능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인력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서비스, 세무조사, 불복과 같은 영역에 더 적은 자원을 할당하는 지방 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타지역의 납세자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과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의 납세 검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 개인소득세를 납세자의 거주지나 소득의 원천지에 기반하여 지방 정부에서 직접 과세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¹⁹⁾
 - 우선 납세자의 거주지 관할권에 과세 권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갑’이 ‘가’ 지역에 거주하나 근무를 ‘나’ 지역에서 하는 경우 고용주의 원천징수세가 ‘갑’이 속

17) Liberati, Paolo and Agnese Sacchi, “Tax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157(1/2), 2013, p. 202.

18)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p. 115~116.

19) Bell, Michael E. and Joanna Regulska,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The Case of Financing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in Poland,” *Public Finance in a Worl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Forty-Seventh Congre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47, 1992, pp. 187~201.

- 해있는 거주지 관할권에 귀속되는지 고용주나 과세 관청 중 하나가 확인해야 함
- 반대로 소득의 원천지에 과세 권한이 있다면, ‘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갑’이 만약 ‘나’ 지역에서도 임대 소득과 같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이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함
 - 이때 각 지역에서 자체 세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세율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2. 지방소득세 독립의 배경 및 의의

- 과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²⁰⁾, ²¹⁾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4년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면서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공유하고 그 외 세율·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음²²⁾
- 정부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2013년 9월 24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²³⁾
 -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부과 구조에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율조정,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수가 자동으로 변동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

20) 결정세액의 10%

21) 과거 지방소득세(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sur-tax)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부과되는 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위해 과거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본문에서 ‘부가세 방식’이라고 편의상 표현하였으나, 이것이 실제 소득세의 부가세라는 의미는 아니며 과거의 지방소득세는 엄연한 독립세로 과세요건과 부과주체 등에 있어서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임(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22) 정지선·윤성만·최천규,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2015. pp. 161~192.

2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2013. 9.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969, 검색일자: 2023. 3. 23.

-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한 주 명분은 지방 자치 실시로 지방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방재정 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임²⁴⁾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13년 12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²⁵⁾
- 법률안을 통해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것을 제안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1월 1일부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과세체계가 개편됨²⁶⁾
-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득세 총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율(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음
 - 독립세 방식으로 변환된 이후로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24) 유재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pp. 889~898.

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8762호」, 2013. 12., p. 2.

26) 위택스, 「2014년 지방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https://www.wetax.go.kr/html/popup/2014/3.html>, 검색일자: 2023. 3. 23.

〈표 Ⅲ-1〉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지방세법」	구성 및 내용	해당 조문
제8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개정	
제1절 통칙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성, 과세기간, 납세지 등	제85조 내지 90조
제2절 거주자의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절차, 세액공제 및 감면,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제91조 내지 102조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계산 절차,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결정·경정 등	제103조 내지 103조의9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종합과세·분리과세	제103조의10 내지 103조의12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 환급 등	제103조의13 내지 103조의18
제6절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세액공제 및 감면,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등	제103조의19 내지 103조의32
제7절 내국법인의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연결납세방식, 과세표준, 연결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 등	제103조의33 내지 103조의4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신고와 납부, 결정·경정 등	제103조의41 내지 103조의46

자료: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그림 Ⅲ-1]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자료: 위택스, 「2014년 지방소득세 이렇게 바뀝니다」, <https://www.wetax.go.kr/html/popup/2014/3.html>,
검색일자: 2023. 3. 23.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지만 조세 행정에 비효율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 역시 존재함²⁷⁾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국세 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세 세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상황에 맞는 조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었다는 점임
 - 지역 형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도를 반영할 수 있음
 - 제도 개편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지방소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워짐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변수는 세율적용과 세액공제, 감면 정도라는 의견이 있음²⁸⁾
 - 명목상 독립세화라고 하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세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임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납세협력비 증가 및 행정비용 증가가 있음
 - 납세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납세협력비 부담이 증가함
 - 지방세 당국은 지방소득세 제도의 복잡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필연적이므로 이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함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책의 사업비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만 58억원으로 S/W 개발 용역비로 51억원, 장비구입비로 7억원이 예정되었음²⁹⁾

27) 황영현,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에 관한 소고」, 『계간 세무사』, 제140호, 2014, pp. 33~63.

28) 유재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pp. 889~898.

29)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지방재정세제실, 등록번호 2013-91.

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징수 방식의 변화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사업소득에 더해 개편된 과세체계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오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전에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면,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지방소득세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형태였음

$$\text{총결정세액} \times 10\% = \text{개인지방소득세}$$

$$\text{총결정세액} \times 10\% = \text{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하여 산정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함
 - 「지방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할 것을 정하고 있음³⁰⁾

$$\begin{aligned} \text{종합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text{산출세액} \pm \text{세액공제·감면} \\ &= \text{개인지방소득세} \end{aligned}$$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하여 산정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함

30) 「지방세법」 제95조

-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음³¹⁾

$\begin{aligned} & \text{법인세 과세표준} \times \text{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text{산출세액} \pm \text{세액공제} \cdot \text{감면} \\ & = \text{법인지방소득세} \end{aligned}$
--

〈표 III-2〉 「지방세법」상 규정된 과세표준

구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91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9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표 III-3〉 「지방세법」상 규정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95조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23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료: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31)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체계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제출해야 함
-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함

〈표 Ⅲ-4〉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¹⁾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2), 3), 4)}
신고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주: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2)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 서식
 자료: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함

〈표 Ⅲ-5〉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구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¹⁾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2), 3)}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주: 1)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2) 「지방세법」 제103조의23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제3항
 자료: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내용을 저자 정리

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교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조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부분임
 - 이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에 관한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특례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공제·감면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공제·감면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함

-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와 대칭하여 제정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III-6〉 조세특례 및 지방세특례의 의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 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저자 정리

- 2014. 12. 23. 이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장을 통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개정에 맞추어 2014. 12. 23.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음
-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하였음
 - 기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남아 있는 지방세특례 관련 내용은 농업·임업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 규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규정 정도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는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장의2에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을 농업 등, 공익·사회복지, 연구 및 인력개발, 문화 및 관광, 중소기업 등 지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례,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봄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통 특례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양 법 모두에서 감면·면제·공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등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따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이 확인됨

〈표 Ⅲ-7〉 국세와 지방세의 소득세 조세지출 적용 비교

항목 ²⁾	국세 ³⁾			지방소득세 ^{1), 3)}		
	조문	법인	개인	조문 ²⁾	법인	개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①	×	○	지특97의4①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10①1·3	○	○	지특102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69	×	○	지특129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	지특101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29의7	○	○	지특115조의4 ⁴⁾	×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24	○	○	지특99조	×	○
연금액좌세액공제	조특86조의4	×	○	지특97조의3	×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②	×	○	지특97조의4②	×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④	×	○	지특97조의4④	×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59의4③	×	○	지특97조의4③	×	○
자녀세액공제	소득59의2	×	○	지특97조의2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30	×	○	지특116조① ⁵⁾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	○	○	-		

〈표 Ⅲ-7〉의 계속

항목 ²⁾	국세 ³⁾			지방소득세 ^{1), 3)}		
	조문	법인	개인	조문 ²⁾	법인	개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30의4	○	○	지특118	×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72	○	×	지특167조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63의2	○	×	지특124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77	○	○	지특132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	○	○	지특124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126의6	○	○	지특166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96의3	○	○	- ⁶⁾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95의2	×	○	137조의2	×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70	×	○	지특131	×	○
기장세액공제	소득56의2	×	○	지특93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104의8	○	○	167조의3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18의2	×	○	지특106조의2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66	○	×	지특126조 ⁷⁾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13의2	○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38의2	○	○	- ⁶⁾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96	○	○	지특138조	×	○

주: 1) 실질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됨

2) 항목은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난 2021년 조세지출 실적의 과세표준 중 세액공제·감면의 상위 29개를 선택함

3) 기울임체는 2023년 6월 기준 (실질적으로) 일몰된 규정임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6)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됨

7)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조항

자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이 가지는 대표적인 효익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화된 지방의 역할에 맞추어 자주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임
 - 지방세 산출이 독립적 계산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국세의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수입이 좌우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해짐
 - 지자체별로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지방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

- 반대로 신고 등의 관련 업무가 기존 세무서에서 지방자체단체로 이관되면서 납세협력비용에 변화가 발생함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협력부담, 순효율성 비용, 심리비용을 합한 값을 의미함³²⁾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납세자는 과거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서 오는 절차적 부담이 추가되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에서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번 신고·납부하면 국세청이 산출된 세액에서 10%의 세율로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이전하는 형태여서 납세자에게는 단 한 번의 신고·납부행위만 요구되었음
 - 현재 온라인을 통한 국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신고로 완료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 사이트에서 각 신고하고 있음

32) 윤상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정책과제 2019-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독립세화 이후 납세자는 국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적법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방문해야 해서 양 기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납세자의 심리적 비용과 순효율성 비용이 많이 증가함
- 다만 2020년 무관할 신고제도³³⁾가 도입되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 신고로 인정하여 타지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부과될 무신고가산세의 위험은 줄어들었음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해졌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납부하던 동일한 세금에 대한 납세지의 추가 및 서류 제출의 중복으로 인한 번거로움만 인식될 소지가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사유로 과세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의 이원화된 신고·납부 절차로 납세자의 이동 동선 및 행위 태양이 추가되어 번거로움이 증가함
 - 국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상 번거로움이 증가함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증가함
 - 국세 산출세액에 단일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던 가산세 방식의 지방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납세자는 누진세율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 가산세에 대한 계산을 직접 수행해야 함
 - 지방소득세 산출이 복잡해지면서 조세전문가에게 신고업무를 위임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특히 영세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위한 비용 부담이 증가함

33)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표 Ⅲ-8〉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독립세 방식의 장점	독립세 방식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가능 • 국세의 세제개편에 지방세 세수가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자체별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지방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된 신고 시스템 및 중복 서류 제출로 인해 납세자의 절차적 부담이 증가함 • 지방소득세 산출이 복잡해지면서 신고위임 등으로 인한 신고비용이 증가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현행 과세 행정의 검토

1. 다원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가. 온라인 플랫폼 상세 현황 및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시도

1) 국세(홈택스)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국세 서비스 플랫폼임
- 코로나19 이후 신고 창구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온라인 플랫폼인 홈택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홈택스는 현재 850여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목록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음

〈표 IV-1〉 홈택스 주요 메뉴 및 기능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신고·납부	이용 시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24:00 * 홈택스로 세금신고 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원, 법인세(정기신고) 2만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07:00~23:30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표 IV-1〉의 계속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신고·납부	신고 가능 세목	세금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현황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
	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
신고서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 •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또는 원천세 등)세금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신고자료 생성 필요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납부 선택 후 지로시스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원하는 형태의 납부(신고분 납부, 고지분 납부, 자진 납부, 타인세금 납부 등)를 선택 • 실제 납부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조회·발급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서비스 (납부내역조회 서비스에 한해 06:00~24:00)
	주요 서비스 목록	전자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목록조회, 합계표 및 통계, 본지점·총괄납부 조회권한 관리,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발급보류·예정목록, 거래처 및 품목관리, 메일 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등
		현금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사용·매입·매출내역, 현금영수증 수정, 발급수단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납세관리인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삭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제공동의: 조회, 미성년자료조회, 온라인신청, 제공동의 취소 등 • 자료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제출현황조회,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등 • 원천징수의무자: 전자문서 API 자료실 		

〈표 IV-1〉의 계속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조회 · 발급	주요 서비스 목록	세금 신고 납부	신고	• 세금신고결과조회,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양도소득세)종합안내·신고안내정보 조회,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카드사대리납부조회·예정고지세액조회, (상속·증여세)결정정보 조회,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중간예납세액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등
			납부	• 납부내역조회,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등
		세무대리 정보	• 세무·신고대리 수입동의, 세무대리인조회, 세무대리인 해임, 신고대리정보이력조회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소득자료확인하기, (정기·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정기·반기)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주택등기준시가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등	
		기타	• (정기·반기) 소득자료확인하기, (정기·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정기·반기)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주택등기준시가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등	
민원 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365일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365일 06:00~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365일 24시간	
	대상 민원	한영 발급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소득금액증명	
한글 발급 (5종)		•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신청· 제출	이용 시간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365일 06:00~24:00 •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365일 06:00~24:00 • 일반세무서류 신청, 소비제세 신청, 거주자증명 등: 24시간	
		제출	• 각 자료에 대한 법정 제출기간 중 매일 06:00~24:00	
	주요 신청 종류	일반세무서류 신청	• 국세청의 모든 민원서류가 조회됨 • “신청구분” 인터넷 신청일 경우 홈택스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신청, 휴업 중 재개업신청 등		
소비제세 신청		• 개별·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면세미납세신청신고 등		

〈표 IV-1〉의 계속

구분	분류		포함 목록
신청·제출	주요 신청 종류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신청, 모범납세자 추천 등
		(정기·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신청접수내역조회, 첨부서류제출하기, 장려금 미리보기 등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송달장소(변경) 신고,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환급계좌개설, 징수유예신청,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 등
		기타 신청업무	• 전자고지 신청/해지, 세법해석, 불복신청, 민원서류발급제한, 외부위원지원서 제출, 사실증명신청,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일자리창출계획서, 민원증명발급예약 등
상담·제보	상담		•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문의사항 질의 시 전문상담관이 답변
	제보	제보 방법	•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탈세제보 종류	• 사업자차명계좌, 거짓(세금)계산서수수, 대부업자탈세, 학원비부조리신고센터,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위장 가맹점, 명의위장사업자, 부동산투기, 해외탈루소득, 해외금융계좌, 사이버탈세(수입누락·허위경비 등)

자료: 국세청 홈택스 메뉴(www.hometax.go.kr, 검색일자: 2023. 4. 8.) 및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상기 설명한 PC 홈택스 외에도 해당 사이트의 80% 가량의 기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 또한 운영되고 있음
- 언택트 시대에 맞춰 2019년 말 212종에서 2020년 말 700여종까지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함
 - 소비·원천세 등 6가지 세목의 모바일 신고와 불복청구 및 고충 민원과 같은 189가지의 민원 신청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장됨

〈표 IV-2〉 손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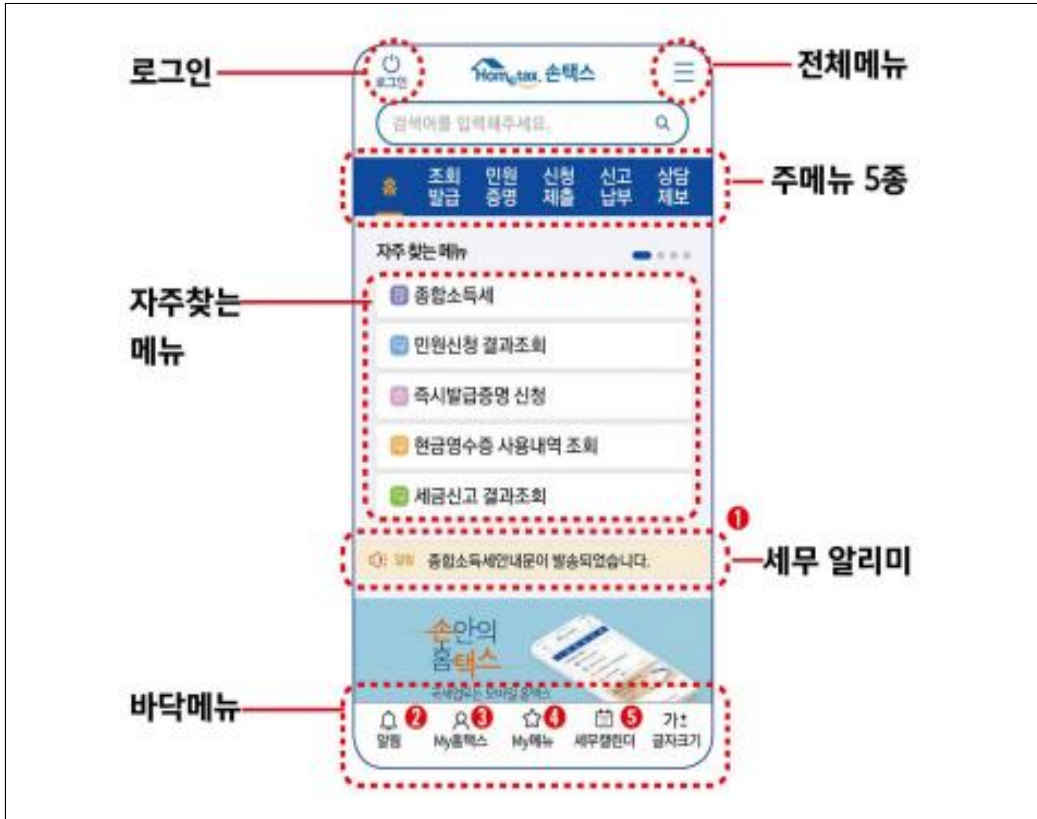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 목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전자고지열람,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등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환급금 조회 등
민원·증명	증명발급신청(14종), 사실증명신청(12종), 민원신청조회 및 팩스전송 등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휴폐업신고, 재개업신고 등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자진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등
상담·제보	탈세제보, 방문상담예약,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상담사례검색 등

자료: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에 관한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5. 3.

- 손택스의 기본 접속 페이지는 [그림 IV-1]과 같으며, 첫 페이지에서 주메뉴 5종과 자주찾는 메뉴, 알림메시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³⁴⁾
 - 손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세무 알리미 항목(①)에서 신고 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내역 등이 표시되며, 앱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민원신청 결과와 납세 안내 등은 앱 푸시나 쪽지로 발송되고 이 내용은 알림 항목(②)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My홈택스 항목(③)에서는 세금신고 및 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등의 세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즐겨 사용하는 서비스는 My 메뉴 항목(④)에 지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캘린더 항목(⑤)에서는 월별 세무 일정 등 개인별 세무 일정을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음

34)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이용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Idx=&tm3Idx=, 검색일자: 2023. 4. 8.

[그림 IV-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



자료: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이용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lIdx=&tm2lIdx=&tm3lIdx=, 검색일자: 2023. 4. 8.

2) 지방세

- 현재 지방세의 경우 전국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가 이용 가능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택스 운영 전부터 독자적인 전자세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를 시행해온 바 있음
- 200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04년 부산시, 2005년 인천시 등이 행정안전부보다 먼저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 대구시도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함

가) 위택스(wetax)

-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통한 지방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위택스 시스템을 개발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³⁵⁾
 - 위택스 구축에는 2019년까지 338억원의 국비와 25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됨
 - 국비는 위탁운영비를 비롯한 시스템 구축비, HW 및 SW의 유지보수비로 사용됨
 - 지방비는 위탁운영비로 사용되며, 별도의 이택스를 사용하는 4개 도시 역시 2019년 현재 연간 5,500만원에서 3억원 가량의 위택스 위탁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
 - 위택스의 관리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택스 외에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등 다양한 지역 관련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위택스에서는 8개 지방세 세목과 세외수입에 대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환급 신청, 공무원 대행신고 외에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그림 IV-2] 참조)³⁶⁾
 -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함
 - 고지서 전자송달 및 문자 알림, 연납 및 분납, 자동납부, 대행인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사항 안내와 지방세 미리계산 등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함께 제공됨

35)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36)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검색일자: 2023.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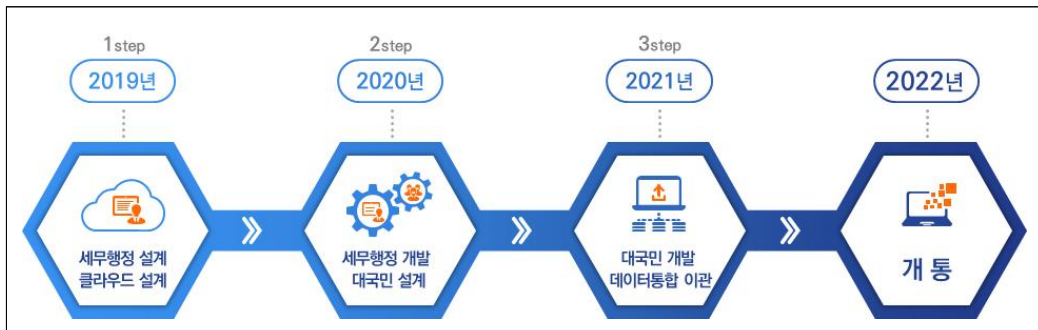
[그림 IV-2] 위택스 전체 메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공무원대행신고	
취득세 ·부동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지방세 지방세의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지방세 지방세의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	환급금 간단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지방세의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고지서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고지서 전자사서함 문자알림 신청 간편납부번호 신청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대행인 신청 ·위임자 승인	공무원대행신청 ·공무원대행신청 ·공무원대행신청확인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지방세의수입 ·총포 수수료 ·건설업등록 수수료	합계상수도요금 ·지방세 ·지방세의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합계상수도요금 ·지방세 ·지방세의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 ·지방세의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신청이력 ·일반납부 변경신청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대행인 관리 ·대행인 신청 ·위임자 승인 ·체납내역 조회 ·납부결과 조회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신고내역 ·지방세 ·지방소득세 ·담배반출 ·면세담배공급 ·총포 수수료 ·건설업등록 수수료	통합납부바구니 ·납부바구니 조회 ·납부확인	납세자 일괄조회 증명서 발급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문서 확인	지방세 환급제외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신청현황	체납 지방세 조회 대행신청 ·대행 신청 ·위임자 승인 ·체납내역 조회 ·납부결과 조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조회 수납정보 조회 전자신고 통계 수납정보 통계 지방소득세 공무원인증				
지역자원시설세	수정·경정 ·수정신고 ·담배소비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청구 내역	지방세 정보 세목별 안내 법령개정사항 안내 지방세 미리계산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 자료실	은닉재산 신고 지방세 홍보캐릭터 전국 세무부서 찾기 BI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재센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재센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나의 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납부확인서 보관함 압류내역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 상하수도 수용가번호등록	담배소비세 ·제조사 ·수입판매업자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 ·담배반출 신고 ·면세담배 공급신고 ·반출 전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주민세 ·주행분										

자료: 위택스 홈페이지, 「전체메뉴」, <https://www.wetax.go.kr>, 검색일자: 2023. 4. 8. 내용을 저자 편집

-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3년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세무행정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³⁷⁾
 - 2019년 사업 시작 첫해에는 각 지자체의 전산장비 통합 관리와 중앙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2020년과 2021년에는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납세편의 서비스 개발과 함께 데이터를 이관하고 통합함
 - 2023년 초 개통을 목표로 2022년 세무 담당 공무원 교육까지 마쳤으나,³⁸⁾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2023년 6월 현재 개통 준비 중인 상태임

[그림 IV-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42, 검색일자: 2023. 6. 12.

- 위택스 역시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PC 버전과 함께 모바일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음

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42, 검색일자: 2023. 6. 12.

38) 『경상매일신문』, 「상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세무담당자 교육」, 2022. 10. 26.,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99567&part_idx=7, 검색일자: 2023. 6. 12.

- 일부 세목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하기, 증명서 발급, 환급신청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스마트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신고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PC 버전에서만 가능함
 - 부가서비스에서 각종 분할납부와 체납 관련 행정과 기타 대행 관련 업무 또한 PC 버전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표 IV-3〉 스마트 위택스 제공 주요 서비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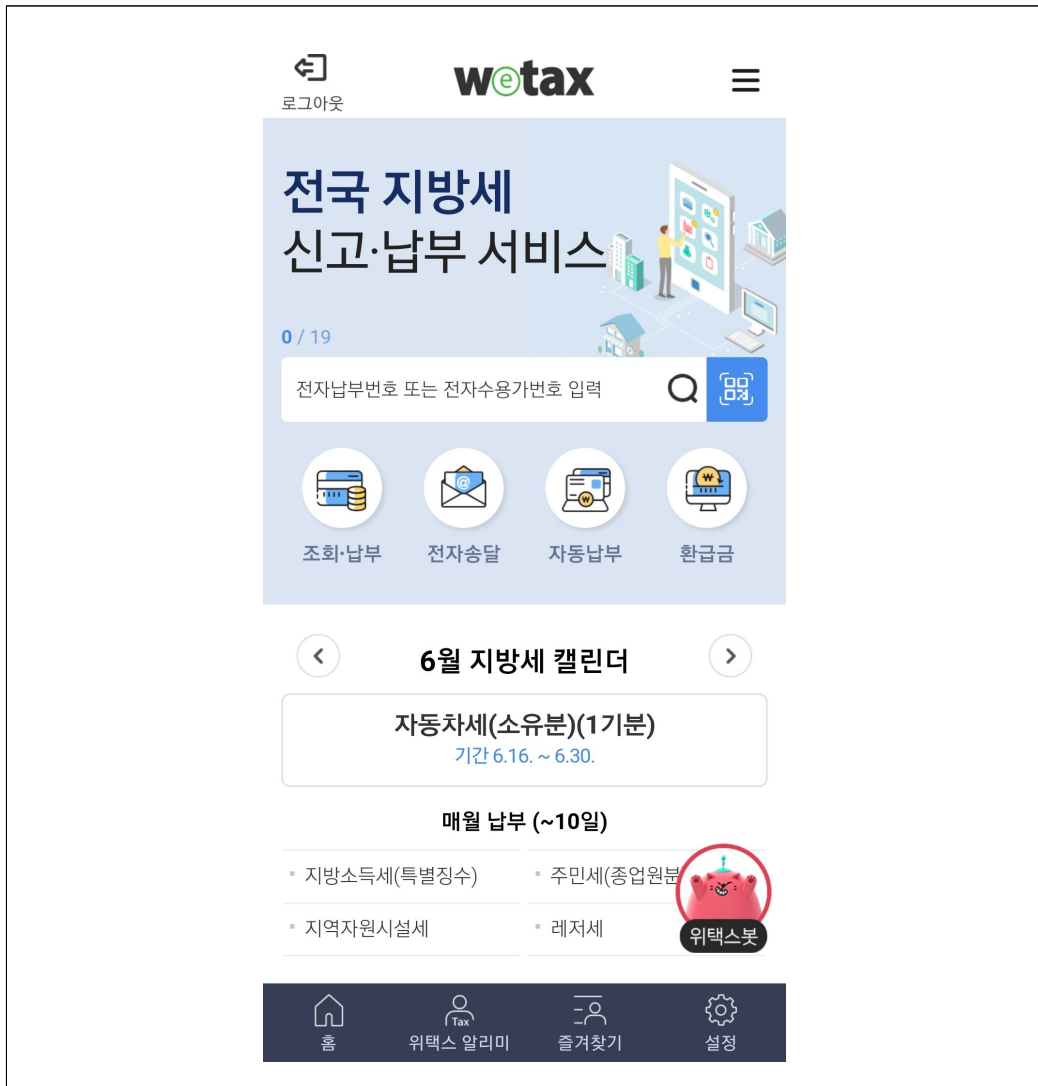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 목록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번호 조회
증명서 발급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부가서비스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납부,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체납내역 조회
나의 위택스	위택스 알리미,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

자료: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내용을 저자 정리

- 스마트 위택스는 납세자의 이용 성향을 고려하여 간결한 첫 화면을 제공하고 있음
 - 서면 고지서를 송달받고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첫 화면 가장 상단에 전자납부번호 등의 입력이나 QR 접속이 가능한 검색 필드를 배치함
 - 또한 조회납부, 전자송달, 자동납부, 환급금 등 납세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들을 첫 화면 중앙에, 그 아래에는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한 지방세 캘린더를 두고 있음
 - 납세자들이 별도의 페이지를 찾지 않고도 문의가 가능하도록 챗봇(위택스봇) 바로가기를 첫 화면에 배치함

- 또한 바닥 메뉴의 위택스 알리미 항목에서 납세자 개인이 납부할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즐겨찾기 메뉴를 구성할 수 있음

[그림 IV-4] 스마트 위택스 첫 화면



자료: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나) 이택스(etax)³⁹⁾

- 서울시는 2001년 6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이택스 시스템을 마련함
 - 2019년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60만명이며, 서울시의 예산 없이 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 및 운영되고 있음
 - 2019년까지 기존 시 금고였던 우리은행이 총 328억 2,500만원, 2018년부터 복수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434억 1,4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음
 -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인 STAX도 함께 운영함
 - 2022년까지는 이택스 회원가입 시 지방세를 조회 혹은 납부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으며, 이 마일리지는 SSG머니나 마이신한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었음
 - 은행·카드사·간편결제사를 직접 연계하여 결제 수수료를 무료 혹은 최소화하였으며, 무인수납기 및 편의점 납부, 서울시 및 하위 자치구의 세입금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세입 수납 재해복구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음
 -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모두 영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음

- 부산시는 2004년 이택스 시스템을 개통하여 365일(00:30~23:30) 이용 가능한 부산 사이버지방세청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부산시 시 금고에서 2019년까지 총 14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함
 - 신용카드사와의 별도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로페이백을 제공하고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 기능도 도입함
 - 스마트폰 납부, 자치구 및 군 관공서 내 무인수납기와 편의점 납부가 가능하며, SKT의 전자송달 서비스도 제공함

39)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 4~8.

- 인천시는 2005년부터 납세자와 수납기관, 시 금고를 365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통해 이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4만 5천명이며, 2019년까지 시 금고가 160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됨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간편결제도 가능함
 - 서울시 및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무인수납기 납부가 가능하며, 인천시 및 하위 자치구·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각종 부담금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납부가 연결되어 있음

- 대구시의 이택스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도입 이후 2009년 이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위택스 안에 대구시 이택스를 끼워넣은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9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0만 5천명이며, 2019년까지 총 91억 9,900만원의 시 금고 예산이 투입됨
 - 신고는 위택스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없고 간편결제 역시 가능함

- 위택스와 일부 지자체의 이택스 시스템별로 실적을 비교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위택스가, 납부 금액은 서울시 이택스가 가장 높았음
 - 누적 가입자 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택스 시스템이 약 880만명으로 그 뒤를 잇는 서울시에 비해 약 3.4배 가량 많았으나, 납부 건수 및 신고 금액은 서울시 이택스가 위택스에 비해 각각 약 2.5배 및 1.3배 가량 높은 4,160만건과 약 2조 4,169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IV-4〉 2019년 기준 지방세 전자세정 시스템별 실적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누적 가입자수	신고건수	신고금액	납부건수	납부금액	
위택스	8,758,849	16,952,496	22,475,964	16,379,335	18,825,460	
이택스	서울시	2,594,447	1,993,000	3,989,942	41,600,000	24,169,476
	부산시	540,390	160,574	109,800	11,407,737	4,817,351
	인천시	445,465	10,842	18,977	8,347,483	3,929,380
	대구시	104,747	위택스에서 신고		2,268,686	493,942

자료: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 4~8 각 표에서 발췌

다) 소결

- 행정안전부의 위택스와 별도의 이택스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다음 〈표 IV-5〉를 통해 비교함
 - 현재 각 지자체의 이택스 서비스는 위택스와 연계되어 위택스에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 다만 서울시의 단건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위택스에서 조회는 가능하나 납부가 어려워, 서울시 이택스에 별도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전반적으로 2021년 전자세정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에서 높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추가적인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경우 서울시 시 금고에서 2019년까지 762억원 가량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이택스의 국비 338억원과 지방비 250억원을 합한 금액보다 큼
 - 사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서울시 이택스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모바일 앱에서의 간편인증 사용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고 영문 페이지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존재함
 - 위택스보다 늦게 도입된 2009년 대구시 이택스는 위택스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IV-5〉 위택스 및 지역별 이택스 비교¹⁾

(단위: 년, 명, 원)

구분	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부산시 이택스	인천시 이택스	대구시 이택스
도입시기	2007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누적 가입자 (2019기준)	8,758,849명	2,594,447명	540,390명	445,465명	104,747명
예산 (2019기준)	국비 338억원 지방비 250억원	시 금고 762억원 위택스에 연 5,500만원 부담	시 금고 150억원 위택스에 연 3억원 부담	시 금고 161억원 위택스에 연 2억원 부담	시 금고 92억원 위택스에 연 2억원 부담
기능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신고 및 납부				
모바일	고지 및 납부	고지 및 납부	고지 및 납부	-	-
연결	-	이택스에서 위택스 연계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납부 가능	납부 가능	납부 가능	-	-
간편결제 ²⁾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ARS납부	-	1599-3900	1544-1414	1599-7200	080-788-8080
전용 콜센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활용	1566-3900	051-888-5454 ~6	032-440-3061 ~2	053-803-2535
특이사항		신기술 활용 (간편인증으로 모바일앱 사용), 모바일앱 다국어 지원			위택스의 보완적 역할

자료: 1)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 9 표 발췌 및 일부 내용 업데이트

2) 사이트별 납부안내 페이지

3) 온라인 플랫폼 다중 체계의 연계 및 애로사항

가) 홈택스와 위택스

-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오다 지방세 독립 후 독자신고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부터 PC 버전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시 개인소득분에 대해 연계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⁴⁰⁾
-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내역 창에서 ‘신고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그림 IV-5] 참조),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가 더욱 쉬워짐

[그림 IV-5] 위택스의 기능



자료: 위택스 홈페이지, 「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 4. 29.,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54486>, 검색일자: 2023. 4. 8.

- 지방소득세 연계신고의 프로세스는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②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클릭, ③ 납세자 확인 절차, ④ 위택스 이동, ⑤ 과세 정보 필수항목 자동 채움, ⑥ 전화번호 입력, ⑦ 선택항목(세무대리인 등) 입력, ⑧ 신고 종료의 순서로 이루어짐

40) 위택스 홈페이지, 「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 4. 29.,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54486>, 검색일자: 2023. 4. 8.

- 또한 지방세정 시스템인 위택스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국세 행정 시스템인 홈택스에 비해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세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여 신고 및 납부 시 불편을 겪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존재함
 - 홈택스는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로 자동 인정되나, 위택스의 경우 기존 제출한 신고서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수정 제출 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또한 가상계좌 결제 등 납부 방법에서도 홈택스보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이 세무대리인 신고 시 불편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과 같이 일부 증명서는 세무대리인의 발급이 어렵고, 납세자 본인만 발급한 경우도 존재함

나) 위택스(전국 지방세 공통)와 이택스(서울, 부산, 인천, 대구)

- 2009년 서울시까지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위택스의 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택스와 이택스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택스에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
 - 이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시되어온 문제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애로사항은 해소된 상태임
 - 그러나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한 군데서만 단 건의 재산세 납세 의무가 존재할 때 위택스에서는 납부가 어려우며 서울시 이택스로 별도 접속하여 납부 처리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4호)」을 개정하여 지속해 추진해온 위택스와 이택스의 완전한 통합을 도모함⁴¹⁾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부칙 2조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

템(위택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은 2022년 2월 2일까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택스와 이택스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함

- 그러나 이택스 운영 지자체 중 일부는 통합에 이견을 보이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가장 오랜 기간 이택스를 운영해 온 서울시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함께 기존 제공되던 선진화된 서비스와 노하우가 매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외국어 페이지나 보다 다양한 간편결제 등 위택스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부산과 인천은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지역 특화서비스의 유지를 요청함

다) 국세청의 지방세 동시 납부 사례

-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지방세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과거 2008년경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인터넷으로 동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음⁴²⁾
- 국세 포털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 정보를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하는 방식임
 -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주민세 납부·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위택스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메뉴가 나타나며, 여기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전자납부를 진행할 수 있음

41)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 4~8.

42) 행정안전부, 「5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 실시: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간 납부 연계시스템 구축」, 2008. 5. 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X164sLNh7DAcjWwxbEVpgLRfijSePon8A1muYCBgOaoGKTFC97b1CW1jfK42Vk21.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5414, 검색일자: 2023. 4. 8.

- 위택스, 홈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가입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함
- 위택스 시스템이 보급된 전국 1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되었으며, 당시 별도의 이택스를 운영하고 있던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은 위택스와의 연계가 어려워 대상 지자체에서 제외됨

나. 현장 신고 창구의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현황

1) 통합민원실⁴³⁾

- 행정안전부는 2019년 각 시·군·구청에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확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함
-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설치하여, 통합민원실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여 처리하던 각종 인허가 업무와 세무 행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
- 과거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 신고가 가능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 지자체 신고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세무서가 없는 8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4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2019. 4.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07, 검색일자: 2023. 4. 8.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이용 사례〉

- ▶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였다.
 - A씨는 ①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 작성 → ②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④ 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 ▶ B씨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된 후에는 한곳만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국민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됐다.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2019. 4.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07, 검색일자: 2023. 4. 8.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먼저 설치되어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29개의 통합민원실을 추가 설치함(〈표 IV-6〉 참조)
- 2019년까지 설치된 31개소 외에도 2020년에는 19개의 통합민원실 추가 설치를 계획한 바 있으나, 2023년 현재 통합민원실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최근 정보는 확인이 어려움

〈표 IV-6〉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지역

지자체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		관할	지자체		관할
시도	시군구	세무서	시도	시군구	세무서	시도	시군구	세무서	시도	시군구	세무서
2017년(2개소)			충남	부여군	논산	2020년(19개소)			전북	고창군	정읍
경기	양주시	의정부		예산군	예산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전남	장흥군	해남
	화성시	화성	전북	장수군	남원		서초구	서초, 반포		경남	장성군
2019년(29개소)			전남	무안군	목포	부산	진구	부산진	경남	진주시	진주
대구	달성군	동대구		영광군	서광주		울산	울주군		울산, 동울산	제주
부산	기장군	금정	구례군	순천	세종	본청		세종	경기	용인시	
	부산진구	부산진	문경시	상주			경북				김포시
울산	울주군	울산	고령군	서대구	경북	영주시		영주	화성시	화성, 동수원	
	남양주시	남양주	군위군	안동			강원				포천시
경기	부천시	부천	의성군	안동	충남	천안시		천안	충남	홍성군	홍성
	포천시	포천	봉화군	영주			충남				
강원	정선군	영월	예천군	영주	충남	천안시		천안	충남	홍성군	홍성
	원주시	원주	김해시	김해			충남				
충북	횡성군	원주	양산시	마산	충남	천안시		천안	충남	홍성군	홍성
	괴산군	동청주	창녕군	마산			충남				
충북	증평군	동청주	고성군	통영	충남	천안시		천안	충남	홍성군	홍성
	진천군	청주					충남				

자료: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행안부, 시·군·구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2019. 4. 2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70307, 검색일자: 2023. 4. 8.

2) 『한국세정신문』, 「세무서·시군구청 없어도 ‘이상무’…‘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전국에 32곳」, 2020. 4. 2.,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203>, 검색일자: 2023. 4. 8.

□ 달성군청 내에 국세청 지역민원실을 운영해 오던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지역민원실을 2019년 8월 통합민원실로 확대하기도 함⁴⁴⁾([그림 IV-4] 참조)

44) 국회의원 추경호 국정감사 보도자료, 「추경호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 주문: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 되어야」, 2019. 10. 17., https://www.peoplepowerparty.kr/file_download?attach_file_id=FILE_000000000127224&file_sn=0, 검색일자: 2023. 4. 8.

- 행정안전부가 통합민원실을 계획하기 전 국세청에서도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전국 37곳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이미 지역민원실이나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해 온 바 있음
- 대구 달성군청 통합민원실은 행정안전부 통합민원실 설치 계획에 없던 지역으로, 지역의 요청으로 설치된 사례에 해당함

[그림 IV-6] 대구시 달성군 국세청 지역민원실의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사례



자료: 국회의원 추경호 국정감사 보도자료, 「추경호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 주문: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 되어야», 2019. 10. 17., https://www.peoplepowerparty.kr/file_download?attach_file_id=FILE_000000000127224&file_sn=0, 검색일자: 2023. 4. 8.

- 다만 통합민원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력 지원 및 정보 보안 등의 문제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어 추후 확대 여부는 미지수임
 - 세무서가 없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세무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추가적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또한 국세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들이 많은데, 아직은 통합민원실이 위치한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가 국세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움
 - 이러한 이유에서 통합민원실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국세청 시스템에 제한된 접근 권한만을 허용하고 있음

2) 기타 국세 및 지방세 오프라인 연계 행정 시도 사례

-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특정 세목이나 기간의 경우 지자체 혹은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세무 업무를 처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⁴⁵⁾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시·군·구청에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까지 포함)와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고 접수함을 설치함
 - 신고 접수함을 통한 신고는 ①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③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 ④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⑤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절차를 따름
- 2007년 재정경제부는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어 국세 및 지방세정책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를 꾀한 바 있음⁴⁶⁾
 - 당해 규정 제2조에 협의회가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2항에서 “부동산세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지원세제 등 국세와 지방세간 연계되어 조정 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제3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간사와 협의회 안건과 관련한 부처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명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협의회가 실제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음

45) 진천군청, 「개인지방소득세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908&mode=view&no=513969494>, 검색일자: 2023. 4. 8.

46)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규정」(시행 2007. 6. 21., 재정경제부 훈령 제160호) 제1조

2. 지방소득세 독립 후 쟁점

가. 경정청구 효력의 상호 인정 여부

- 과거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구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이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가 「국세기본법」에 의해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납세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직권 경정이 이루어졌음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⁴⁷⁾
 -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하면서 지방소득세 확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현 체계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 역시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임
 - 국세와 지방세의 경정청구 효력에 대한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따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시간적·비용적 비효율이 많이 증가함
 - 이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견이 존재함

47)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 심포지엄」, 2021. 4. 9.,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02650>, 검색일자: 2023. 4. 20.

- 이에 반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이나 공제도 대부분 같으므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상호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 문언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한 경정청구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환급되는 것으로 해석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현재 실무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소관부서인 납세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등에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⁴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환급처리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됨
 - 통상 소득세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결정됨
-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관하여, 법인세 환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판단에 전제함⁴⁹⁾
 -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처분청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임

48)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사례」, 2017. 4. 24., <https://call.nts.go.kr/search/search.jsp>, 검색일자: 2023. 4. 19.

49) 조심2015지0487 (2015. 6. 3.) 지방소득세 경정

-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인한 지방세환급금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규정⁵⁰⁾에 따라 해당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처분청이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나. 중복세무조사의 우려

-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⁵¹⁾으로 침익적 성격이 있음
 - 납세자의 탈세행위를 파악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성실 납세의 이행을 촉구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으나 권력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 또는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에 한계를 가지므로 세무조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세무조사가 가지는 침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세무조사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원칙^{52), 53)}이 적용되어야 함
-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던 과거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음

50) 「지방세법」 제97조 제2항

5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5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53)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내용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⁵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⁵⁵⁾
- 지방소득세가 독립하였으나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원인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표준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중복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
- 현재 「국세기본법」⁵⁶⁾ 및 「지방세기본법」⁵⁷⁾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한해 동일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의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실시하고 있음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불복청구의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4) 「지방세법」 제97조

55) 「지방세법」 제103조의24

5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57)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주체가 국세청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당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현행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므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산정까지의 조사는 동일하여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음⁵⁸⁾
 - 세무조사 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혼란을 예상할 수 있음
- 지방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⁵⁹⁾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실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 과세당국과 협의 또는 조율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임
- 현행 제도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공유하고 있는데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 외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 세무조사의 대부분이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음
 - 국세 세무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을 근거로 국세 영역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58)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59) 『국세신문』, 「국세 과세표준을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조사로 검증?가능해?」, 2020. 7. 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13>, 검색일자: 2023. 5. 8.

- 국세와 지방세에 각 시행되는 세무조사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실시 전 국세청과 사전에 세무조사를 협의·조정하여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⁶⁰⁾
 - 각 과세기관에 의해 실시된 세무조사의 결과가 다를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에 차이가 생겨 과세기관 사이 권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 중복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세법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으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¹⁾
 - 중복세무조사 논란, 불안한 법률관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자주권만을 강조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⁶²⁾
 -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소득세가 공유하고 있고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된 신고내용의 검토 및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래부터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 국세청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과세표준의 산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전문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국세 및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을 담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기본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심의 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63), 64)}

60) 『세정일보』, 「국세-지방세 중 ‘복세무조사’에 노출된 납세자들」, 2020. 12. 24.,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7>, 검색일자: 2023. 5. 8.

61) 정상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지방세포럼』, 통권 제23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 70~72.

6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63) 국회의원 심재철(「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2015. 7. 9.), 국회의원 조원진(「지방세기본법」, 2015. 7. 6.), 국회의원 정청래(「지방세기본법」, 2016. 5. 9.)

64) 『국세신문』,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만이 해법 아니다」, 2013. 5. 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492&replyAll=&reply_sc_order_by=C, 검색일자: 2023. 5. 8.

- 해당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정함
-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의 국세 세무조사와 일원화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권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표 IV-7〉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발의된 법률안

발의자	법률안	법안 내용
조원진의원 (2015. 7. 6.)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제5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부정
	「지방세법」 제97조, 제98조, 제103조의9, 제103조의25, 제103조의26, 제103조의44, 제103조의5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십재철의원 (2015. 7. 9.)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개월 이내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 의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 (제7조)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세무조사 금지
정청례의원 (2016. 2.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요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소득세/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한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 (제2·3항)연결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세무조사 필요성이 판단될 때, 연결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조사 요청 - 연결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조사를 요청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 의무 • (제4항)필요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

자료: 『국세신문』,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만이 해법 아니다」, 2016. 5. 9.,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492&replyAll=&reply_sc_order_by=C, 검색일자: 2023. 5. 8.

3.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정보 공유 관련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간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통해 마련되어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제18조 제2항의 5호부터 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시 취합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함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와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시 게재해야 하는 공고의 시기 및 내용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장부 및 문서 서식을 규정함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다.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④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⑤ 법 제33조제6항과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 ⑥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 ⑦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 ⑧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5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내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대상의 정의와 정보주체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제공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의 소극적인 정보 제공의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정보 요청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이나 결손액(정리보류)과 같이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함
 -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과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 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보안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신뢰의 부족, 정보 제공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 비용, 요청된 정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권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움⁶⁵⁾

- 다만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포탈협의를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⁶⁶⁾
- 2021년 5월 이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었음
 -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건이 완화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2013년부터 세무조사에 활용해 오고 있었음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정보, 고액 현금거래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이 외국의 금융정보 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위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받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정보가 제공됨
- 2021년 5월 20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조문 내에 국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⁶⁷⁾
 -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건이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 탈루에 관한 조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5) 문정욱,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 공유 저해 요인」, 『정보통신정책』, 제19권 6호, 2007, p. 13.

6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67) 마정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8.

V. 시사점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창구의 통합적 연계

가.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적 연계

-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에 사용되는 온라인 시스템들이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이택스(4개 지자체 지방세) 등으로 나뉘어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플랫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러한 완전한 통합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각 조직의 내부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의 홈택스와 위택스 시스템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비롯하여, 신규 시스템 개발에 소요될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임
 - 기존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비용 외에도 독립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확대 배치한 인력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 역시 존재함
 - 이 경우 홈택스로 위택스 및 이택스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발전된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겠으나, 국세청의 업무 가중과 함께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각 기관 간 소통 및 권한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다만 위택스를 지자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금도 각 지자체와의 소통과 납세자 상담 창구 일원화 문제가 언급되고 있음

- 시스템이 홈택스로 통합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대내외적인 민원 사항 해결이나 주기적인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의 3자 협력이 필요해지므로 소통과 업무 처리 단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 차선책으로 개별적인 운영을 유지하되 한 개의 사이트만 접속해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목록을 마련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음

- 홈택스와 위택스, 이택스에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모두 나열한 페이지를 각각 생성하고, 이 페이지에서 각 세목에 링크를 연결하여 해당 세목의 신고 및 납부 페이지에 연결되게 함

-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구분하여 개별 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은 줄어 들 수 있으나, 연결 후에 여전히 시스템마다 별도의 로그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시스템의 적응을 위한 납세순응비용이 발생함

- 이와 함께 연계 세목 신고 시 생성되는 링크 버튼의 적용 대상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위택스 페이지 링크 버튼이 생성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신고 완료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안내 문구를 표시할 뿐 납세자가 위택스 사이트를 따로 접속해 해당 세목을 직접 찾아 신고하고 있음

□ 이때 홈택스와 위택스, 이택스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더라도, 인터페이스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된다면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시스템별로 신고 및 납부 방법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학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유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메뉴 구성을 비롯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더 긴 시간 서비스를 구축해 온 홈택스보다 아직은 위택스가 기능과 서비스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존재함
- 현재 도입이 준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는 위택스의 서비스와 성능이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국세청과의 협조 등을 통한 기능의 제고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홈택스 혹은 위택스, 이택스에서 로그인 후 다른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이 자동 유지하는 기능까지 탑재한다면 각 시스템 간 전환이 통합된 형태에 가깝게 편리해질 수 있음
 -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이 가입자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입자 사전 동의 등을 비롯한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나. 현장 창구 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 통합민원실은 세무서가 위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지역 내 대표 지자체 청사에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음
- 국세청과 지방 정부가 전자 세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령층 및 농어민 납세자와 같은 정보서비스 취약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이용률까지 감안한다면 상설 현장 통합 창구의 확보 역시 온라인 시스템 통합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60대는 56.7, 70대 이상은 34.6의 수준에 이르렀으며,⁶⁸⁾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21.2%에 불과한 수준임⁶⁹⁾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41; p. 43.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51.

- 또한 농어민 역시 디지털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은 70.6,⁷⁰⁾ 인터넷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30%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⁷¹⁾
 -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일반 국민 전체를 종합하더라도 37.5%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68% 이상의 이용률을 보여준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서비스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⁷²⁾
 - 현재도 소득세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에 한해 구청과 같은 지역 내 대표 지자체 혹은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렇게 세무서와 지자체 청사에서 특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자체 청사에 한해 상시 운영한다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음
 - 다만 기존에 상설로 설치되었던 통합민원실들 또한 세무서 측의 파견 인력의 부족과 국세 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한계는 존재함
- 이 밖에도 지자체 방문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상시 비치된 신고 접수함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무서 내 소득세 신고 서류 비치 장소 신고 접수함에 접수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함께 비치하거나, 신고접수함을 창구 근처에 두어 납세자에게 노출 빈도를 높이고 창구 담당자의 안내를 쉽게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신고 접수함 역시 모바일 메시지나 세무서 내 안내문과 창구 담당자의 안내와 같은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 접수함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음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41; p. 43.

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p. 51.

72) 상동

다. 위탁 및 통합징수 가능성의 검토

- 지방소득세와 같이 국세에 유사 중복성이 높게 나타나는 세목의 경우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거나 국세 징수와 통합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지방소비세까지 일괄 징수 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독립 전 지방소득세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납세자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된 세금을 지자체의 인구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성격이 강함
- 이 밖에도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고지, 수납, 체납을 건강보험에 위탁하여 통합징수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⁷³⁾ 현행 지방소득세 징수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됨
 -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2008년 위탁 결정 후 각 공단의 노사정 합의,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 보험의 자격관리, 부과, 급여 업무는 각 공단에서 유지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부과하는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징수 방식을 취한 바 있음⁷⁴⁾
 - 납세자는 하나의 연방과 주 정부의 개인소득세가 통합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 정부 세금을 연방 세금의 백분율로 계산하여 통합 납부함
 - 이때 연방 세금에 대한 백분율은 주마다 세율 설정 권한이 있어 납세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회보험징수통합」,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7&PAGE=7&topTitle=, 검색일자: 2023. 6. 12.

74)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 114.

- 연방 정부는 해당 연도의 예상 세액을 주 정부에 사전 지급하고 모든 세금 신고서가 접수된 후 최종 조정을 계산함

- 다만 독립세로의 전환이 이제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징수업무를 위탁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제도가 지닌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시일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업무가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 주권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징수권을 얻자마자 관련 업무를 다시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음
 - 독립된 징수를 통해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의 지위를 납세자들에게 확립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 및 활성화

- 국세와 지방세 행정의 연계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 존재한다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의 협업을 보다 수월하고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음
 - 컨트롤 타워 조직이 국세와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공통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전략을 구상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전담함으로써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컨트롤 타워 조직이 상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두 기관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 역시 수행함으로써 원만한 협업을 가능하게 함
- 이때 재정경제부 훈령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에 설치 목적과 기능, 구성이 규정된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컨트롤 타워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는 국세 및 지방세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국세 및 지방세정책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조직임⁷⁵⁾
 - 운영 규정의 제2조 2항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연계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또한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는 2007년 훈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는 하나,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직을 신설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한시적이고 제한적 수준이기는 하겠으나 다양한 범주의 국가 및 지자체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협의체 활용 가능성 역시 모색해 볼 수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⁷⁶⁾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22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함⁷⁷⁾
 - 광범위한 의미에서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에 필요한 정책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지방협력위원회는 위낙 광범위한 정책을 다루는 만큼,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라기보다 두 기관이 합의 과정에 있는 개별 정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협의 기구에 가까울 것으로 보임

75)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1조

76)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로(「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분기별로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함(「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77) 「지방자치법」 제186조 제1항

3.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의 일원화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서 국세 과세표준의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소득세의 경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가 동 시간에 각각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과거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구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이기 때문에 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및 세무조사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또는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경정 및 세무조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음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실현을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무조사권⁷⁸⁾ 및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검사권⁷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⁸⁰⁾
- 국세와 공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정 및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을 통해 납세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은 납세자가 따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8)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6조

79)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80)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현 구조에 관하여 납세자는 실질적으로는 중복세무조사라고 체감할 수 있음
 - 중복된 절차를 요구하는 경정청구 또는 이중으로 시행되는 세무조사는 법적인 정성 및 납세자의 영업 자유를 저해하고 납세 비용의 상승을 야기함
-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 문언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표준 경정에 의해 국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환급되는 것으로 해석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⁸¹⁾
 - 현재 실무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소관부서인 납세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등에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⁸²⁾
- 국세 과세표준의 경정에 따른 환급뿐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적용에 의한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 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으로 인한 국세 환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환급해줄 필요가 있음
- 납세자는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인지 여부와 구분 없이 신고한 세금에 대한 경정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환급받기를 원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실시한 감면·공제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공제가 존재하는 경우, 국세 특례와 동시에 적용된 지방세 특례상의 공제·감

81)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82)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사례」, 2017. 4. 24., <https://call.nts.go.kr/search/search.jsp>, 검색일자: 2023. 4. 19.

- 면에 관하여는 국세에 대한 경정 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져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소득세법」⁸³⁾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비를 지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⁸⁴⁾에 의해 해당 의료비 지출 금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도 공제되므로 해당 개인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례 적용을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로 국세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를 따로 이행해야 한다면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해 납세자의 피로도가 증가함
 - 실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인한 국세의 환급을 인지하는 경우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직권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음
 - 다만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환급절차상의 단순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제·감면 정책의 적극적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동일한 과세표준에 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는 현 체계로 인해 납세자의 영영이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짐⁸⁵⁾
-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거나 세법의 해석을 달리할 경우, 국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고 납세자는 각 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8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2항

85)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전국에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연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의 자유의 침해가 심각하여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재 경정하게 되면 사업장별로 추징·환급이 발생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경정하게 되면 장기간의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확한 조세법률관계의 확정에 문제가 발생함⁸⁶⁾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는 납세환경의 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경영활동 활성화를 통해 도모될 수 있으므로 납세환경 개선의 방안으로 세무조사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무조사는 과세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정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제한을 반대함⁸⁷⁾

- 중복되어 실시되는 세무조사 및 기관 간 해석 불일치로 인한 납세순응비용 증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만을 옹호할 수는 없음
 - 전국에 소득원을 가진 납세자는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86) 임동원·전병욱,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5권 제6호, 법조협회, 2016, pp. 274~311.

87) NTN, 「국세 과세표준을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조사로 검증? 가능해?」, 2020. 7. 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13>, 검색일자: 2023. 6. 2.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독립은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납세자의 고통이 발생하고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현 구조의 납세환경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질문검사권⁸⁸⁾, 89), 90)에 근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 질문, 장부,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⁹¹⁾

- 과세표준이 지방세 독자적인 것(주민세 균등할 및 사업세 부가가치할·자본할·수입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경정함
- 그러나 과세표준이 국세에 준거하는 것(주민세 법인세할 및 법인사업세 소득할)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그 후, 당해 세무서의 경정·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방식임
 -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법인세 경정·결정에 관한 자료로만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함
- 지방세 세무조사 시 국세 세무조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납세자에게 중복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임

□ 일본의 구조를 참조하여 현재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유되고 있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이 아닌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합하여 국세청이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88) 「지방세법」 제26조(도부현민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89) 「지방세법」 제72조의7(사업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90) 「지방세법」 제298조(시정촌민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91) 김태호, 『일본의 지방소득세제』, 해외지방세제도 시리즈 1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 pp. 16~40 재인용

- 앞서 <표 III-6>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공통 특례 항목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각 법의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세금 면제·감면·공제에 관한 세무조사 시 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도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세청이 가지는 이유는 국세청이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인력의 충원이 쉽고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⁹²⁾
- 현행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와 공유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아닌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결정·경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9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4.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방안 마련

- 2023년 1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납세자의 다양한 과세 정보 공유를 모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됨
 - 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인 과세 정보 공유 외에도, 앞서 다룬 국세세무조사, 경정청구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후 언급할 다양한 정보 공유 체계들이 본 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정 및 세무조사 결과가 통일성을 가지고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소득세에 즉시 반영되어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국세청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연속적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거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 차이를 방지할 수 있음
 - <표 III-6>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교표에서 확인되듯, 법인과 달리 개인의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공통하여 적용되는 특례사항이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처분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2021년 5월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제공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던 납세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해당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이력, 수집 증거, 세무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여전히 기관 간 공유를 명시한 규정이 없음
 -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동일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일 뿐, 국세청이 과세표준의 경정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공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정보 공유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관련 정보 확보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만큼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체납액 및 결손액 등의 정보를 비롯한 국세청에서 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제된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보 취득 방법이 될 수 있음
-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협력비용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실시간으로 과세표준의 경정 여부, 세무조사 실시 여부, 보유한 과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의 자동 알림을 통해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이 예정된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어야 함
 - 국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경정에 제출된 자료를 공유하여 각 기관의 경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타 기관이 확인하고 경정 전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세무조사 실시 여부, 수집된 증거, 세무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진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연속적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실시 여부, 수집 자료,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의 불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 실시 전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 관할이 다른 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실시를 전산망에 예고하여 조사 시작 전 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미리 구하거나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드는 시간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수집된 증거를 전산망에 공유하여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전산망에 공유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누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이 전산망에 등록한 세무조사 결과를 등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 전 지방자치단체의 경정 요청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음
- 납세자는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된 자료 제출 및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고 경정 결과 및 세무조사에 대하여 기관 간 검증 절차가 추가되어 처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음
-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근거 법령의 제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 간 국민 개인정보 공유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납세자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의 자료 수집 시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미리 받는 방법이 있음

-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각 호에 '세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해당 조항이 국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납세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법인 「내국세법」에서 세금 신고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 세무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 정부와 미국 국세청 간에 공식적인 정보 공유 계약 또한 존재함⁹³⁾
 - 미국의 납세자가 연방 소득세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조치는 자동으로 주 세무 당국에 전달되며, 반대로 주 소득세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함
 - 더불어 이러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또한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⁹⁴⁾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⁹⁵⁾
- 세무조사 기법에 대한 모형 개발과 같이 세무조사를 매뉴얼화하여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으로 제공해야 함
 - 매뉴얼화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절차 진행에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
 -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93)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 117.

94) Internal Revenue Service(US), Tax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 for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1973.

95) 전동훈, 『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1.

5. 향후 논의사항

- 본 연구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에 논의하였으나,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해당 방안들은 주로 납세자 편의 혹은 행정 효율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이나 이해관계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함

- 또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행정적인 쟁점 외에도 앞서 언급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관계와 같이 제도적 쟁점 또한 존재하고 있음
 - 향후 제도 측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이렇게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나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인해 중복적 혹은 이원적 성격을 지니는 세목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이들이 정당성이 결여된 이중과세에 해당할 경우, 본 보고서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해당 세목의 통합이나 일부 세목 제거와 관련한 방안까지도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2.
- 김태호, 「일본의 지방소득세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지방세제도 시리즈 1권, 2017.
- 류영아,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 마정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문정욱,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 공유 저해 요인」, 『정보통신정책』, 제19권 제6호, 2007, pp. 1~17.
- 오연천, 「지방교육세 신설구상의 접근구도와 설계방향」, 『행정논총』, 제27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89, pp. 2083~2099.
- 유재권,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pp. 889~898.
- 윤상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 정책과제 2019-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임동원·전병욱,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5권 제6호, 법조협회, 2016, pp. 274~311.
- 전동흔, 『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정상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지방세포럼』, 통권 제23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pp. 70~72.

정지선·윤성만·최천규,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2호, 2015, pp. 161~19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pp. 341~366.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60년사: 제1권 연대사』, 2017.

한재명·김민정,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쟁점과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 79~110.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재정세제실, 등록번호 2013-91, 2013.

황영현,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에 관한 소고」, 『계간세무사』, 제140호, 2014.

Bell, Michael E. and Joanna Regulska,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The Case of Financing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in Poland,” *Public Finance in a Worl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Forty-Seventh Congre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vol. 47, 1992, pp. 187~201.

Internal Revenue Service(US), *Tax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 for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1993.

Liberati, Paolo and Agnese Sacchi, “Tax Decentralisation and Local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157(1/2), 2013, pp. 183~205.

McLure, C. E., “Tax assignment problem: conceptual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in achieving sub-national fisc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Course*, 1998.

Vehorn, Charles L. and Ehtisham Ahmad, “Tax Administratio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2. 법령

「개별소비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증권거래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3. 판례 및 결정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 조심2015지0487(2015. 6. 3.)

4. 웹사이트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민의힘, <https://www.peoplepowerparty.kr>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307830554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ikms.assembly.go.kr>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s://etax.daegu.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의정부시청, <https://www.ui4u.go.kr>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

진천군청, <https://www.jincheon.go.kr>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정연구 23-03

납세자 중심의 국세와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발 행 2023년 7월 31일

저 자 정훈·박하얀·이나현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044-866-6331

I S B N 979-11-6655-226-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